



도시와 정의 도시와 권리

도시와 정의 도시와 권리

지금 우리의 도시는 정의로운가? 우리 시민들은 시민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그동안 도시를 연구하고, 도시에서 다양한 실천 운동을 수행해왔던 여러 단체들이 함께 모여 "정의Justice"와 "권리rights"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 도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을 위한 실천 대안들을 모색해 본다.



2010 12 03
FRI
am 10:00
pm 06:50

서울대 신양관
405·406호

공동 건고싶은 도시만들기시민연대 | 녹색교통운동 | 예술과 도시사회연구소 |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주최 인권영화제 | 인권운동사랑방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 한국공간환경학회 | 한국도시연구소 | 환경정의 | 가나다순

후원 경향신문
프레시안
한국연구재단

학술문화제

도시와 정의 도시와 권리

지금 우리의 도시는 정의로운가? 우리 시민들은 시민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그동안 도시를 연구하고, 도시에서 다양한 실천 운동을 수행해왔던 여러 단체들이 함께 모여 "정의Justice"와 "권리rights"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 도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을 위한 실천 대안들을 모색해 본다.



2010 12 03
FRI
am 10:00
pm 06:50

서울대 신양관
405·406호

공동 주최 | 경고싶은 도시만들기시민연대 | 녹색교통운동 | 예술과 도시사회연구소 |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주최 | 인권영화제 | 인권운동사랑방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 한국공간환경학회 | 한국도시연구소 | 환경정의 | 가나다순

후원 | 경향신문
프레시안
한국연구재단

도시와 정의 / 도시와 권리 학술 문화제

지금 우리의 도시는 정의로운가? 우리 시민들은 시민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그 동안 도시를 연구하고, 도시에서 다양한 실천 운동을 수행해왔던 여러 단체들이 함께 모여 “정의 (Justice)” 와 “권리(rights)” 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 도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을 위한 실천 대안들을 모색해 본다.

◎ 일시 : 2010년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50분

◎ 장소 : 서울대학교 사회대 신양관 4층

◎ 공동 주최 단체 :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녹색교통운동, 예술과 도시사회연구소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영화제
인권운동사랑방, 주거권운동네트워크,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도시연구소, 환경정의

◎ 후원 : 경향신문, 프레시안, 한국연구재단

< 세부 프로그램 >

첫째, 학술 행사 프로그램

“도시와 정의, 도시와 권리” 학술대회

◎ 일시 : 오전 10시 - 오후 6시 50분

◎ 장소 : 서울대학교 사회대 신양관 4층 405호

◎ 학술행사 주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걷고싶은 도시만들기시민연대

이 발표논문집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시 간	발 표 내 용
10:00 ~ 10:30	등 록

10:30 ~ 10:40	개회사 : 박 경 (목원대 교수, 한국공간환경학회 회장)
10:40 ~ 11:15	제 1 부 : 진보적 도시 연구의 새로운 지향 : 정의와 권리 사회 : 박 경 (목원대 교수) 발표 : ● 강현수 (중부대 교수) 도시 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필요성과 과제 ● 광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 21세기 도시권과 도시정의의 철학
11:15 ~ 12:00	제 2 부 : 도시와 정의 사회 : 박 경 (목원대 교수) 발표 : ● 조명래 (단국대 교수) 한국 사회와 공간 정의 ● 김지은 (일리노이 주립대) 도시계획과 도시 정의 ● 이상현 (한신대 교수) 도시와 에너지, 기후 정의
12:00 ~ 13:00	점심 휴식 시간
13:00 ~ 13:50	제 3 부 : 마을만들기와 인권 (특별 섹션) 사회 : 이영범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발표 : ● 김경민 (대구YMCA사무총장) 가출청소년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마을만들기 ● 김은희 (도시연대사무국장) 영구임대아파트, 자존감을 잃어버린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지정토론 : 고은태 (중부대 교수), 임은아 (안산별자리도서관 관장) 홍승모 (도시연대 커뮤니티디자인센터장) (가나다 순)
13:50~ 14:00	휴식 및 티타임
14:00~ 15:10	제 4 부 : 도시와 주거에 대한 권리 사회 : 임서환 (건원) 발표 : ✓ ●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주거권 운동의 역사와 과제 ✓ ● 김용창 (서울대 교수) 주택의 미래와 주거권, 그리고 주거복지정책 방향 ● 변창흠 (세종대 교수) 도시권을 기준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의 구조 분석 및 성과 평가 ● 조성찬 (토지+자유 연구소) 거품 의존형 오너십 소사이어티 전략과 전세대란의 인과관계 ✓ ● 남영호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사회주의 도시의 (재)구성과 주거권

15:10~ 15:20	휴식 및 티타임
15:20~ 16:40	제 5 부 : 도시에 대한 권리의 확장 사회 : 조명래 (단국대 교수) ● 이현재(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여성주의적 도시권을 위한 시론: 차이의 권리에서 연대의 권리로 ● 황진태 (서울대) 누구를 위한 디자인인가?: 해치맨 프로젝트를 사례로 ● 김기남 (서울대) 경쟁주의와 학력격차가 불러온 도시간 명문고 경쟁, 그리고 학생의 권리 ● 김준호 (경희대) 공공공간에 대한 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시론: 거리 노숙인의 '공간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 김병인 (성공회대) 도시와 노점상 인권 ● 윤지환 (경희대) 도시공간의 생산과 전유 - 서울 문래예술공단을 사례로 ● 허남혁 (충남발전연구원) 도시권과 식량권의 결합: 도시 먹거리체계의 먹거리계획의 의미
16:40 ~ 16:50	휴식 및 티타임
16:50 ~ 17:35	제 6 부 : 도시와 인권의 만남 사회 : 이성백 (서울시립대 교수) 발표: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과 '도시'는 만나야 한다 ● 고은태 (중부대 교수)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 보호 가능성 탐색 ● 김중섭 (경상대 교수) 인권도시 만들기과 인권조례 제정운동: 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17:35 ~ 17:40	휴식 및 티타임
17:40 ~ 18:50	제 7 부 : 도시 운동과 인권 운동의 결합 과제 사회 : 고은태 (중부대 교수/국제엠네스티 집행위원) 발표 : ● 박래균 (인권재단 사람) 도시 및 지역 단위에서 인권운동의 가능성과 과제 지정토론 김은희 (도시연대 사무국장) 김중섭 (경상대 교수) 김홍철 (환경정의 공간정의국장)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가나다 순) 그 외 참석자 전원 토론 참가
18:50 -	저녁 식사

* 본 학술행사는 한국공간환경학회 2010년 추계 정기학술대회를 겸합니다.

둘째, 도시와 인권 영화제 프로그램

“여기, 사람이 있다”

- ◎ 일시 : 오후 12시 30분 - 오후 5시 30분
- ◎ 장소 : 서울대학교 사회대 신양관 4층 406호
- ◎ 영화제 주관 : 인권영화제,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시 간	상 영 영 화
12:30 - 12:35	<p>영화제 배경 설명</p> <p>도시의 역사는 개발의 역사다. 그리고 개발은 언제나 어김없이 인권을 짓밟아 왔다. 개발의 역사를 되짚지 않고 도시에서 ‘인권’을 말할 수 없다. 60년대 광주대단지 항쟁에서부터, 사당동, 상계동, 행당동 등을 거치며 인권이 도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도시가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드러났다. 2009년 용산참사는 지금과 같은 개발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는 절박한 요청이다. 도시와 인권 영화제는 개발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해보려고 한다.</p>
12:35 ~ 14:20	<p>◎ 상계동 올림픽 김동원, 1988, 27분, 다큐</p> <p>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당시 ‘도시 미관을 위한 재개발’ 때문에 삶의 터전을 빼앗긴, 상계동 173번지 주민들의 3년간 투쟁기록.</p> <p>◎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장호경, 2009, 60분, 다큐</p> <p>용산 참사 세입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용산 철거민들이 망루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진실과, 용산 참사 유가족들의 눈물과 투쟁을 담았다.</p> <p>● 활동가와의 대화 이원호(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 위원회) 김윤이(한국도시연구소)</p>

	전국철거민연합 활동가
14:20 ~ 14:30	휴식과 티타임
14:30 ~ 15:40	<p>◎ 평범한 사람들 홍경탁, 2010, 32분, 극영화</p> <p>남편을 위해서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가던 아내는 철거문제와 직면하면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 직장을 때려치운 남편은 그런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p> <p>◎ 시트콤 박대진, 2010, 20분, 극영화</p> <p>영수는 40대의 평범한 남성 직장인이며 재개발 예정 구역에 조그마한 집도 한 채 있다. 그러던 중 용산 참사가 일어난다. 분노한 영수는 거리 인터뷰에 응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동료들과의 술자리를 가지는데 ……</p> <p>● 감독과의 대화</p>
15:40 ~ 15:50	휴식과 티타임
15:50 ~ 17:20	<p>◎ 남일당 이야기 평화바람, 2010, 86분, 다큐</p> <p>용산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세입자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올랐다. 카메라는 삶의 터전은 뺏겼지만 동지를 얻고 투쟁을 배웠다는 할머니들의 육성을 담아냈다.</p>

셋째, 설치 전시 및 퍼포먼스 프로그램

“문래동” 설치 전시 + 대화 퍼포먼스

- ◎ 일시 : 오전 10시 - 오후 5시 30분
- ◎ 장소 : 서울대학교 사회대 신양관 4층 로비 및 복도
- ◎ 설치 전시 및 퍼포먼스 주관 : 예술과 도시사회연구소

<문래동>이라는 제목의 본 설치작품과 퍼포먼스는 ‘건설용 비계’를 조형작품처럼 설치하여, 그 설치물과 함께 비디오영상, 소리사운드, 연구자료집, 행사 카타로그 등이 전시된다.

학술행사와 영화제가 진행되는 동안 예술과 도시사회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설치작품 주변에 앉아 관객들과 문래동에 관한 대화를 나눈다.

차 례

제 1 부 : 진보적 도시 연구의 새로운 지향 : 정의와 권리 사회 : 박 경(목원대 교수)
 발표 :
 ● 강현수(중부대 교수) 도시 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필요성과 과제1
 ● 광노완(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21세기 도시권과 도시정의의 철학17

제 2 부 : 도시와 정의 사회 : 박 경(목원대 교수)
 발표 :
 ● 조명래(단국대 교수) 한국 사회와 공간 정의33
 ● 김지은(일리노이 주립대) 도시계획과 도시 정의38
 ● 이상현(한신대 교수) 도시와 에너지, 기후 정의49

제 3 부 : 마을만들기와 인권 (특별 섹션) 사회 : 이영범(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발표 :
 ● 김경민(대구YMCA사무총장) 가출청소년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마을만들기55
 ● 김은희(도시연대사무국장) 영구임대아파트, 자존감을 잃어버린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58

지정토론 : 고은태(중부대 교수), 임은아(안산별자리도서관 관장)
 홍승모(도시연대 커뮤니티디자인센터장) (가나다 순)

제 4 부 : 도시와 주거에 대한 권리 사회 : 임서환(건원)
 발표 :
 ●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주거권 운동의 역사와 과제
 ● 김용창(서울대 교수) 주택의 미래와 주거권, 그리고 주거복지정책 방향
 ● 변창흠(세종대 교수) 도시권을 통해 본 재정비사업 세입자의 주거안정 문제와 대안71
 ● 조성찬(토지+자유 연구소) 거품 의존형 오너십 소사이어티 전략과 전세대란의 인과관계...83
 ● 남영호(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사회주의 도시의 (재)구성과 주거권

제 5 부 : 도시에 대한 권리의 확장 사회 : 조명래(단국대 교수)
 발표 :
 ● 이현재(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여성주의적 도시권을 위한 시론: 차이의 권리에서 연대의 권리로109
 ● 황진태(서울대) 누구를 위한 디자인인가?: 해치맨 프로젝트를 사례로124

- 김기남(서울대) 경쟁주의와 학력격차가 불러온 도시간 명문고 경쟁,
그리고 학생의 권리137
- 김준호(경희대) 공공공간에 대한 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시론: 거리 노숙인의
'공간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155
- 김병인(성공회대) 도시와 노점상 인권166
- 윤지환(경희대) 도시공간의 생산과 전유 - 서울 문래예술공단을 사례로180
- 허남혁(충남발전연구원) 도시권과 식량권의 결합: 도시 먹거리체계와 먹거리계획의 의미

제 6 부 : 도시와 인권의 만남 사회 : 이성백(서울시립대 교수)

발표:

- 미류(인권운동사랑방) '인권'과 '도시'는 만나야 한다195
- 고은태(중부대 교수)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 보호 가능성 탐색199
- 김중섭(경상대 교수) 인권도시 만들기와 인권조례 제정운동 :
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204

제 7 부 : 도시 운동과 인권 운동의 결합 과제

사 회 : 고은태(중부대 교수/국제엠네스티 집행위원)

발표 :

-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도시 및 지역 단위에서 인권운동의 가능성과 과제219

지정토론

김은희(도시연대 사무국장)	김중섭(경상대 교수)
김홍철(환경정의 공간정의국장)	미류(인권운동사랑방)
민만기(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가나다 순)

그 외 참석자 전원 토론 참가

제 1 부 : 진보적 도시 연구의 새로운 지향 : 정의와 권리

사회 : 박 경 (목원대 교수)

발표 :

- 강현수 (중부대 교수) 도시 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필요성과 과제
- 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 21세기 도시권과 도시정의의 철학

도시 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필요성과 과제

강현수 (중부대 교수)

< 목 차 >

1. 머리말 : 왜 도시에서 정의와 권리를 주장하는가 ?
2. 최근 서구 진보적 도시연구에서 정의와 권리에 대한 관심
3. 도시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의의와 유용성
4. 도시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과제
5. 맺음말

1. 머리말 : 왜 도시에서 정의와 권리를 주장하는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의 철학 책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정의와는 무관할 것 같은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론을 들고 나오는 등 우리 사회에 '정의'의 열풍이 불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용산 참사,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양천경찰서 고문, 쫓불시위 탄압, 국가인권위원회 파행 등 우리나라의 전반적 인권 수준이 계속 퇴행하면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인권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이같이 정의와 권리에 대한 관심 증폭은 최근 우리나라만은 현상은 아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전세계적으로 정의와 권리에 대한 관심이 드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정의와 권리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는 배경은 상당히 복잡적이겠지만, 큰 틀에서 볼 때 경제성장과 경쟁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득세에 따른 반발의 표출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그로 인한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에서 정의와 권리를 운동의 목표로 내세우는 사회 운동들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서구의 진보적 도시 학계에서는 정의와 권리 담론을 다루는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¹⁾

이 글의 목적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정의와 권리 담론을 우리의 진보적 도시 연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것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의 도시 연구에서 정의와

1) 최근 서구의 도시 연구 분야, 즉 지리학이나 도시계획 분야에서 정의와 권리를 다룬 대표적인 책들로는 Harvey, D. (2008, 2009), Marcuse, P. (ed.), (2009) Soja, E. W. (2010) Fainstein, S (2010) 등이 있다. 최근 서구의 도시 연구에서 일찍이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던 프랑스 철학자 르페브르에 대한 뜨거운 재조명 분위기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권리 담론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의와 권리 담론은 신자유주의적 담론에 대항하는 대항 담론으로서 상당히 유용하다. 정의와 권리의 주장은 대중들에게 정서적, 경험적으로 공감대를 갖기가 쉽다. 또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요구와 운동들을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결속하기가 용이하다. 둘째,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할 수 있는 정의와 권리 담론의 구체성과 실천성을 담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공간 단위(scale)가 바로 도시이다. 도시는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며 일상생활의 장소이다. 대중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각종 문제들은 대부분 도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정의와 권리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집행하던 공간 단위였던 국민국가 단위에 대한 회의가 일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가보다 더 큰 공간 차원인 세계적 차원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보다 작은 공간 차원인 도시 단위에서 정의와 권리가 주장되고 있다. 셋째, 따라서 도시 단위에서 정의와 공간 담론이 확산되고 구체화될 때, 대중들의 일상생활에 기반한 잠재적 요구들이 표출되고 결집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사회운동이나 정책 개선을 통해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글의 내용은 이러한 잠정적 결론의 도출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제 2장에서는 정의와 권리 담론을 다루고 있는 서구의 진보적 도시연구의 흐름을 개관한다. 이어서 제 3장에서는 도시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의의와 유용성을, 제 4 장에서는 도시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과제를 살펴본다. 마지막 제 5 장에서 글을 마무리한다.

2. 최근 서구 진보적 도시연구에서 정의와 권리에 대한 관심

1) 정의에 대한 관심

영미권의 진보적 도시 연구에서 처음으로 정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학자는 데이비드 하비라고 할 수 있다. 1973년 출판된 <사회정의와 도시>에서 하비는 영미권 도시 연구에서 처음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정의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이 책에서 하비는 자본주의 도시에 감추어진 부정의와 차별을 날카롭게 분석하였는데, 그의 분석의 결론은 도시의 공간이 일상적으로 부자에게 유리하고 가난한 이들에 불리한 분배 효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 공간이 사회적 불평등을 생산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Harvey, 1973) 이후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공간 연구에 몰두한 하비는 정의에 대한 관심 역시 지속적으로 표방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지구적 환경 문제의 대두,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의 확산, 여성주의 정치철학자 아이리스 영의 연구 성과 등을 새롭게 추가하여 그의 정의론을 확대 심화시켰다. (Harvey, 1992, 1996)

도시나 공간을 직접적인 연구 주제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훗날 도시에서의 정의 문제를 다루는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이가 아이리스 영이다. 영은 일찍부터 동질성을 강조하는 공동체 개념에 대해 회의론을 가지고 이질성과 다양성을 중시하였는데, 이렇게 이질성과 다양성의 장소가 바로 도시라는 데 주목했다. (Young, 1986). 이후 그녀는 부정의를 초래하는 억압의 원천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증시했던 경제적 착취 이외에도 주변화, 무력감, 문화적 제국주의, 폭력 등 사회 문화적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정의가 지리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리 역사적 맥락에서 정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의 정의에 대한 관점이 집대성된 것이 1990년 발간된 그녀의 책 <정의와 차이의 정치>이다. 여기서 영은 부정의를 규정하는 두 가지 사회적 조건으로 첫째, 억압 (oppression) 즉 자기 발전의 제도적 제약과, 둘째, 지배 (domination) 즉 자기 결정의 제도적 제약을 들었다. 영이 제안한 대안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분배 정의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과로서의 분배 정의보다는 과정으로서의 정의, 즉 불평등과 불공정을 창출하는 구조적 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영은 촉구했다. 사회 정의

의 내용에는 반드시 억압받는 집단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완전히 효과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다양한 형태의 억압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의의 목표로 평등보다는 차이와 연대를 강조했다. 영에게 있어서 정의란 차이를 없애버리는 획일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 없이 집단간 차이를 존중하고 그 차이를 재생산하는 것을 촉진하는 제도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Young 1986, 1990) 부정의를 낳는 원인이 경제적 착취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차원이 있으며, 따라서 정의의 목표도 분배의 정의에 국한되서는 안된다는 영의 시각은 그 후 도시에서의 정의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²⁾

이후 서구의 진보적 도시 연구에서 정의에 대한 관심은 데이비드 스미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었다. (Smith D. M. 1994, 2000a, 2000b)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 마르쿠제, 파인스타인, 소자 등이 정의와 관련된 연구서들을 출간하면서 정의가 서구 진보적 도시 연구의 화두가 되고 있다. 파인스타인은 탈산업화와 세계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서구의 도시들에서 오로지 경쟁력 강화 및 경제 성장 촉진만을 강조하는 담론이 지배하고, 그러한 경쟁력과 경제 성장의 최종적 목표가 무엇인지, 성장 혜택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사회적 형평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데 대한 반발이 최근 들어 정의에 대한 관심을 낳게 되는 배경으로 설명한다. (Fainstein, 2010:1-3). 소자 역시 최근의 세계화, 경제 재구조화, 신기술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계층간, 인종간 불평등이 증가하고 사회적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정의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 운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Soja 2010, 20-23)

2) 권리에 대한 관심

서구 도시 연구에서 권리에 대한 관심의 출발은 프랑스의 철학자인 앙리 르페브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1968년 당시 프랑스를 휩쓴 68운동의 와중에 르페브르는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도시가 제공하는 편익을 누릴 권리, 도시 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권리,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를 스스로 만들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에 대한 권리 (le droit a la ville)” 라는 제목의 짧은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난해한 철학적 개념이었지만, 이 책의 제목은 1968년 프랑스 전역을 휩쓴 시위에서 대중이 호응하는 매력적인 구호가 되었다. 이후 프랑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앞세운 도시사회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남미 브라질 등에서는 주거권 운동과 결합하여 도시 빈민의 주거 문제 해결에 상당한 성과를 낳았다.

최근 도시 연구에서 권리 담론이 다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르페브르가 주창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이 학술적 차원 뿐만 아니라 실천적 차원에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선 학술적 차원에서 여러 학자들이 르페브르의 개념을 현 시기에 맞게 정교화 구체화하고 있다. 영미권 마르크스주의 도시 연구의 선도자인 데이비드 하비가 계속해서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주고 있으며, (Harvey, 2008) 미첼, 디켈, 퍼셀 등 소장 학자들이 이와 관련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Mitchell, 2003, Dikey, 2002, Purcell, 2003, 2008 등) 미국의 온건 진보 노선의 도시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인 존 프리드만 역시 도시에서 시민들의 권리를 강조하는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Friedmann, J. 1987, 2002). 앞서 언급했던 아이리스 영은 차이와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를 강조했다라는 측면에서 도시에서 정의 연구 뿐만 아니라 권리 연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도시에서의 권리 담론과 실천이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파생된 도시 빈민들의

2) 이후 영은 그녀의 정의의 관점을 주거지 격리나 지역주의 같은 지리적 현상에 도입하는 연구들을 이어나갔으나 아쉽게 너무 이른 나이에 사망하면서 공간 문제와 관련된 더 이상의 성과를 후학들에게 넘기지 못했다. (Young 2000)

생존권적 요구, 즉 주거권과 같은 사회경제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생존권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의 경우 최근 세계화 과정과 맞물려 선진국의 도시로 몰려드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그 사회 속에 포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새로운 시민권 (citizenship)의 필요성 차원에서 권리 담론이 활용되고 있다. 즉 국민 국가에 기반한 근대적 의미의 시민권이 세계화 시대 이주자의 증가로 그 한계에 봉착하면서, 대안적 시민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때 도시 단위가 국가 단위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민권의 공간적 단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홀스톤은 국가보다 도시가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공동체가 되고, 도시에서의 거주자가 이 공동체 소속의 자격 기준이 되며, 도시 생활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권리 주장이 시민권의 내용과 실체가 될 때, 이른바 “도시 시민권(urban citizenship)” 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Holston, 2001) 시민권의 단위로서 국가 단위보다 도시 단위가 더 의미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일상생활의 문제들에서 국가보다는 도시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시 시민권 논의는 세계화 시대 국가 단위의 시민권이 약화되면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대안적 시민권 논의들 중의 하나이다. 사실 대안적 시민권 주장은 지금의 국가 단위의 시민권을 배제하자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소속감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도시 시민권 주장은 도시라는 같은 장소에서 일상생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적 소속감과 책임성을 가지자는 것이다.

실천적 차원에서는 UN산하 기관인 유네스코와 유엔-해비타트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핵심 활동 영역으로 선정하여 보다 정의롭고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담론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의 도시와 국가들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사회 운동이나 도시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범국가적 운동 네트워크인 “도시에 대한 권리 연대 (the Right to the City Alliance)” 가 결성되어 주택, 인권, 도시 토지, 지역사회 개발, 시민 참여, 환경정의 등에 대한 운동을 추구하고 있다.³⁾ 또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 관련 운동단체들이 모여서 지속가능성, 민주주의, 평등, 사회정의의 원칙 속에서 도시의 평등한 이용권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 헌장 (the World Charter of the Right to the City)>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⁴⁾

3) 정의와 권리 연구 및 운동의 수렴

최근에 들어와서는 도시 차원의 운동 영역에서 정의의 주장과 권리의 주장이 겹쳐지면서 상호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론적 영역이나 담론 차원에서도 이러한 수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Soja, 2010: 7)

실천적 차원 뿐만 아니라 담론적 차원에서 정의 담론과 권리 담론이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담론이 상당히 공통된 기반과 지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 양 담론의 기반과 지향 자체가 수직적, 위계적이 아니고 수평적이다. (Henderson and Waterstone 2009, 200). 또한 이 양 담론은 서로 보완적이다. 일 예로 정의의 기준이 없는 무조건적인 권리 주장은 상호 모순과 충돌이 불가피하며, 결국은 힘센 자들의 특권이 약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의 담론이 있어야지만 권리 담론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두 담론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문제 영역과 다양한 주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방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담론이다. 즉 이 두 담론은 해결해야 할 문제의 영역으로서 자본주의의 경제적 착취에만, 해결의 주체로서 노동자계급만을 강조하는 경직된 마르크

3) 미국의 “도시에 대한 권리 연대 (the Right to the City Alliance)” 활동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이 단체 홈페이지 <http://www.righttothecity.org> 참조

4)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과 관련된 이론적 실천적 활동의 전개에 대해서는 강현수 (2009) 참조

스주의에 기반한 실천 담론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3. 도시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의의와 유용성

과거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는 정의 담론이나 권리 담론 모두를 보수적 담론으로 치부하였다. 실제로 정의 담론이나 권리 담론 양자 모두 상당한 보수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나 그 계승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포기한 개량주의적 굴복이라고 여겼다. 예컨대 노동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부정이나 자본주의의 근본 질서를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자본주의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조그마한 양보에 만족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것이다. 정의에 대한 담론 역시 마찬가지로 정의의 기준에 대한 여러 보수주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절차적 정의만을 강조하면서 분배의 정의를 무시할 수도 있고, 분배의 정의를 강조하더라도 권력에 대한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에 따라 혁명과 개량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의 문제의식에서 제대로 포착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 영역들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경제 영역 뿐만 아니라 문화, 환경 영역 등에서, 계급 갈등 뿐만 아니라 인종, 성, 종교, 세대, 성적취향 등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들이 나타났다. 문제와 갈등의 영역이 다차원적이 되고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 운동도 다양한 영역으로 분화되었다.

하지만 각 영역으로 분화된 사회운동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에 대응하기에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각 영역으로 분화된 사회운동들이 자기 자기 고유의 운동 영역을 고수하면서도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도전에 맞서 연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때 정의와 권리 담론은 다양한 문제 영역과 다양한 주체들을 권리와 정의라는 목표를 가지고 신자유주의에 맞설 수 있는 대안적 담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담론 모두 모호하다는 특성이 있지만, 또한 다차원적인 운동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개방성과 포용성,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의에 대한 요구와 주장은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강조했던 경제 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즉 정의의 이름으로 경제 정의 뿐만 아니라 문화 정의, 환경 정의, 공간 정의를 주창할 수 있다. 공간적 규모(scale)에 있어서도 동네 단위에서부터 도시적,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규모로 확장가능하다. 국지적 차원에서 정의가 논의될 수 있는 한편 세계적 차원에서 정의가 논의될 수 있고 이 양 스케일의 논의가 상호 결합될 수 있다. 권리에 대한 요구와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에서부터 사회 경제적 권리에 이르기까지 권리의 스펙트럼은 넓으며,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권 등 지금까지는 없던 새로운 권리들이 계속 발굴될 수도 있다. 권리 주장의 공간적 규모 역시 작은 동네 단위에서 세계적 단위로 확장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양한 분야, 다양한 공간 규모에서 다양한 운동 주체들을 하나로 묶는데 있어서 정의와 권리 담론은 매우 유용한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라클라우와 무페의 주장처럼 다양한 영역에서의 투쟁이 하나의 투쟁으로 동화되어서는 안 되지만, “등가의 체인”에 따라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계의 고리가 바로 정의와 권리 담론이 될 수 있다.

정의와 권리 담론의 가장 큰 약점은 자칫 진보성을 상실한 채 보수적 담론으로 전락할 가능성 역시 높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두 담론에 대한 진보 진영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권리를 개인적 차원에서만 강조할 때 권리 담론은 급격히 보수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진보 진영에서는 권리를 집합적, 보편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정의와 연계하여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이에 대한 연대적 대응의 필요성이 사회적 실천의 측면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유용성을 높이는 배경이라면, 세계화 추세는 특히 도시라는 공간적 단위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유용성을 높이는 배경이다. 세계화의 가속화는 국민 국가 단위로 편성되었던 기존 질서, 즉 이른바 베스트팔렌(Westphalian) 체제가 그 한계에 봉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정의나 권리가 주장되고 실현되는 공간 단위는 국민 국가 단위에서 였다. 그러나 세계화 과정은 문제 발생의 장소이자 문제 해결과 투쟁의 단위로서 국민 국가의 역량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제 문제들은 세계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해결도 또한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⁵⁾ 하지만 아직까지 세계적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올바른 방안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정의와 권리가 세계적 차원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세계적 차원에서 정체성과 소속감, 집합적 연대감이 형성되고 이에 기반하여 책임과 의무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계적 차원에서 이러한 것이 가능하지 못하다. 즉 세계적 차원에서 정의와 권리의 주장과 운동은 가능하지만, 그 해결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기가 쉽지 않다. 이때 도시 단위가 새로운 형태의 집합적 연대의 단위로서, 사회적 통합의 단위로서 국민 국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이제 도시가 세계 인류 대부분이 거주하는 일상생활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의와 권리의 요구가 수렴되고 해결될 수 있는 공간 단위로서 그 유용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4. 도시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과제

1) 정의 담론과 관련된 과제

이제부터 도시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이 지향해야 할 과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정의 담론과 관련하여 스미스는 정의롭지 못한 지리를 노출시키는 것이 보다 정의로운 사회 구조를 발전시키는데 핵심이 된다고 했다. (Smith D. M. 1994) 이처럼 진보적 도시연구에서 정의 담론의 첫 번째 과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무엇이 정의롭지 못한 상태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데이비드 하비가 1973년 <사회정의와 도시>에서 수행했던 작업도 이러한 작업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소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정의롭지 못한 공간이 생산되고 있고 이것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도시 연구에서 정의 담론의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Soja 2010) 첫 번째는 경계 만들기와 공간의 정치적 조직을 통한 정의롭지 못한 지리가 외부적으로 창출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제국주의 국가의 편익대로 식민지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나 게리맨더링 같은 정략적 선거구 획정이다. 두 번째는 다양한 주체들의 일상적 활동을 통해서 정의롭지 못한 지리가 내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차별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차별을 유발하는 계층간, 인종간 주거지 격리 현상, 부자 동네에 좋은 병원, 좋은 학교, 좋은 교통시설이 집중하고 가난한 동네는 이러한 도시 서비스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현상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 번째는 지리적 불균등 발전의 문제이다. 세계적 차원의 불균등 발전에서부터 일국 내의 지역 격차 까지 지리적 불균등 발전은 필연적으로 공간 부정의(unjustice)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5) 국민국가 단위의 시민권의 한계에 대해서는 소이살 (Soysal), 니라 유발 데이비스 (Nira Yuval-Davis), 마틴 알브로우 (Martin Albrow) 등을 필두로 많은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국민국가 단위가 정의를 다루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최근 여러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성 정치이론가인 Nancy Fraser 는 그녀의 최근의 책에서 Scales of Justice: Reimagining Political Space in a Globaling World (2008)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표. 1> 소자가 분류한 부정의(不正義) 지리의 발생 사례

- 외부적 힘에 의한 인위적 경계 만들기와 공간의 정치적 조직에 따른 부정의 지리
 - 프랑스 파리의 방리유(banlieue) - 파리 교외지역에 외국인 이주자들의 집중과 격리, 최근 인종 폭동 발생
 -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인위적 국경 분할과 제국주의 편익에 맞춘 공간 구조
 - 선거구 구획에 있어서의 게리맨더링 (gerrymandering)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백 차별 및 분리 정책 (Apartheid)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구역 점령과 정착촌 건설
 - 안전에 집착하는 도시와 상류층의 폐쇄 구역 (the gated community)
 - 공공공간의 축소와 토지의 사적 소유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

- 다양한 주체들의 자연스러운 공간 이용에 따라 내생적으로 발생하는 공간 차별
 - 소득 수준, 인종에 따른 지리적 격리와 차별
 - 각 구역별, 지역별 공공 서비스의 격차 (지하철, 공원, 학교 등등)
 - 환경 유해 시설의 차별적 입지

- 지역간 불균등 발전
 -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불균등발전
 - 초국적 지역주의
 - 일국 내부의 지역 격차

이상 출처 (Soja 2010 : 32-56)

일단 도시에서 정의롭지 못한 영역이 발견되면, 다음 단계의 과제는 이러한 부정의를 해소하고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 운동과 정책이 제안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시 정부는 가능한 정의를 추구하는 도시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 파인스타인은 도시나 지역 수준에서 정의의 구성요소로 형평성, 다양성, 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요소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도시나 지역 수준에서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제안하고 있다. (Fainstein 2010, 172-175)

<표. 2> 파인스타인이 제안한 도시 지역 차원에서 정의의 목록

○ 형평성 증진

1.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와 적합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새로운 주택 개발은 평균 이하 소득 가구에겐 제공되어야 한다.

2. 서민 주택으로 지어진 주택은 영원히 서민 주택으로 남아야 하며, 나중에 새로 짓더라도 새로운 서민주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3. 특별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 발전 등의 목적으로 기업이나 가구의 입지를 타의에 의해 이전시켜서는 안 된다.
4.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피고용인의 이익과 함께 가능하면 중소기업의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한다. 보통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새로운 상업적 개발은 공공의 이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야만 하고, 가능하면 중소기업의 활력을 촉진해야한다.
5. 대형 프로젝트 (mega project)는 저소득층에게 직접적 혜택을 제공하느니 여부를 엄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만약 대형 프로젝트에 공공 보조금이 투입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도 공공이 개입하여야 한다. 가능한 대형 프로젝트는 점진적으로 수행해야하고, 가능한 많은 다양한 개발 주체가 개입하여야 한다.
6. 도시 대중교통 요금은 저렴해야 한다. 저소득층들이 대중교통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이용요금과 세금을 부과하고, 대중교통을 지원하여야 한다. 대중교통 노선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승용차를 이용해야만 하는 저소득층은 반드시 환급을 받아야 한다.
7. 계획가들은 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음과 동시에 이미 부자인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여야한다.

○ 다양성 증진

1. 도시에서 격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구역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다양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각 가구들을 일부러 이동시켜서도 안 된다.
2. 용도지역제 (zoning) 는 차별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서는 안 되며,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3. 도시 내부 구역들간에는 단절된 경계가 있어서는 안되고 서로 교류가능해야 한다.
4. 누구나 접근가능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이 공급한 공공 공간에서는 특히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 공공 공간에서 정치적 발언이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집단들은 같은 장소를 점유해서는 안된다.

5. 실천가능하고, 사람들이 원한다면 혼합적 (mixed) 토지 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6. 공공 기관은 주거, 교육, 고용 등의 기회에서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던 집단들을 지원해야만 한다.

○ 민주주의 증진

1.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집단들은 그 옹호자에 의해 대변되어야 한다.
 2. 만약 이미 개발된 지역에 대해 계획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이 계획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과 협의한 계획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기존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미래에 대한 유일한 결정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 넓은 범위의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3. 아직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희소한 지역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이 계획의 영향을 받는 지역 바깥에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을 포함하여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 굳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높은 수준을 참여를 기대할 필요는 없다. 포용적 의사결정의 목적은 공정하게 모든 집단을 대변하는 것이지, 참여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다.

이상 출처 (Fainstein 2010, 172-175)

물론 세계화에 따라 국가의 힘이 약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도시 정부보다 국가의 힘이 더욱 강력하다. 또 여기에 세계적 차원의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도시 차원에서 과연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회의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의가 도시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면, 즉 도시 정책 결정을 둘러싼 담론이 도시 경쟁력 보다 정의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면 상당히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물리적 개발에 따라 주민들이 타의에 의해 강제적으로 쫓겨나고 지역사회를 파괴되는 현상, 도시의 가용 재원이 집중되지만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낭비적 대형 도시 프로젝트의 남발 등은 도시 정부 차원의 힘을 가지고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 정부가 정의를 추구한다면 더 많은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도시가 줄 수 있는 혜택을 도시의 다양한 계층과 주민들에게 보다 평등하게 분배하고, 활력있고 접근가능한 공공 영역을 확충하고, 도시 행정의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도시 행정이나 정치에서 소외된 집단을 위한 정책들을 더 많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권리 담론과 관련된 과제

독일의 법 철학자 예링은 일찍이 “투쟁은 법의 영원한 노동이다. 노동 없이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

듯이 투쟁 없이 법은 없다. ... 투쟁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루돌프 폰 예링 저, 윤철홍 옮김, 2007:133)

이처럼 권리는 저절로 인정되지 않으며, 쉽게 제도화되는 것도 아니다. 권리를 가지지 못한 억압된 사람들에 의하여 권리가 요구되고 주장되지만, 기득권층이 그것을 쉽게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이나 투쟁을 통하여 사회적 의식이나 세력 관계가 변하면서, 권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결국 그 권리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법적 제도적으로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해도 끝은 아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이 있었지만, 고문 같은 반인권적, 반헌법적 행위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거리낌 없이 자행되었다. 현 정권에서도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등 헌법에 금지되어 있는 국민기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 법과 제도에 명문화된 권리들이 사문화되지 않으려면 이 역시 지속적 노력과 투쟁이 필요한 것이다.

하비는 세계 인류가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에 합의한 1948년 유엔인권선언만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자본주의 정치경제에서 엄청난, 어떤 의미에서 혁명적 변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신자유주의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인권을 제대로 지킨다면 신자유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Harvey, 2000)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만 제대로 지켜져도 한국 사회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 고문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같은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이 엄연히 보장되어 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10조), 근로의 권리 (32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4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35조) 등 사회권적 기본권 역시 보장되어 있다.

결국 권리 담론과 관련된 과제는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누려야 할 권리의 목록과 그 내용을 확장 심화시키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 과제는 법과 제도상으로는 이미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사문화되어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도록 촉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과제는 아직까지 법과 제도에 권리로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던 영역들을 도시 주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속에 새롭게 포함시켜 주는 일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현재 현실에서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체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가의 지원이나 도움 없이 도시 차원에서 시민이나 주민들에게 특별히 줄 수 있는 권리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도시 차원에서 기존에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장하고, 새로운 권리들을 발굴하는 것은 대중의 일상적 필요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과 함께 진보적 상상력을 요구한다. 학교 무상급식 운동이 좋은 예이다. 이 운동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 다수에게 무상 급식이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나아가 시혜적 복지 개념 대신, 보편적 복지 개념, 즉 복지란 특정 소수만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라는 담론 확산에도 크게 기여했다. 비록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되지는 못했으나, 이미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은 셈이고 따라서 여러 도시와 지역 차원에서 제도화되고 있다. 이처럼 굳이 국가 단위에서 입법화와 제도화를 거치지 않아도 도시나 지역 차원에서 얻어 낼 수 있는 권리들을 발굴할 수 있다. 1960년대 말부터 집권한 일본 동경도의 미노베 지사는 국가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이룬바 시빌 미니멈(civil minimum)으로 지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을 도시 행정의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일본 중앙 정부가 하지 못했던 노인 의료비 무료화 정책 같은 복지 정책, 일본 국가 기준 보다 훨씬 높은 환경 기준을 동경도에 적용했고, 이것이 일본의 다른 지자체에 속속 전파되면서 결국 일본 중앙정부가 국가정책으로 수행하도록 추동했다. (이지원, 1999) 1980년대 당시 켄 리빙스톤이 이끌던 런던 시의회는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 정권에 맞서 런던에서 지방자치 사회주의 (municipal socialism)를 시도했다. (서영표, 2009).

지금 우리의 도시에는 절박한 필요와 요구가 있으나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지 못해, 제도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개인이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권, 독신가구의 주거권, 저소득 계층이 문화를 향유할 권리, 무선통신을 저렴하게 이용할 권리 등도 도시 단위에서 권리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도시의 공공 디자인, 도시의 상징물이나 기념물의 선정, 도시의 지명을 결정할 권리 등을 요구할 수가 있다.

최근 유엔 산하기관인 유네스코와 유엔-헤비타트는 “도시에 대한 권리” 증진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도시에 대한 권리는 다음 세 가지를 지향하는 권리이다. 첫째, 모든 도시 거주자들을 위하여 도시의 잠재적 혜택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도시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도시 거주자들의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셋째, 위 두 가지를 통해 도시 거주자들이 그들의 근본적 자유와 권리를 완전히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큰 방향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각 도시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의 맥락에서 강조되는 내용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UNESCO et al. 2005:4)

<표. 3> 도시에 대한 권리를 구성하는 내용

- ◎ 정치적 차원의 권리 (자유권적 권리)
 - 국적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모든 도시거주자들의 권리 보장
 - 도시 관리에 대한 민주적 참여 보장
 - 집회, 결사, 표현에 대한 권리 보장과 공공 공간의 민주적 이용
 -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
- ◎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차원의 권리 (사회권적 권리)
 - 도시 빈민들이 점유한 토지의 양성화
 - 물과 같은 필수 생존 자원에 대한 권리
 - 도시 거주자들의 집합적 쾌적성과 안전성
 -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균형잡힌 도시 계획 및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도시 개발
 - 적절하고 균형 잡힌 토지이용 관리
 - 기타 노동, 건강, 교통, 교육, 문화, 여가, 공공공간, 공공서비스에 대한 권리

출처 : (UNESCO et al. 2005:4)

이미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진행된 <도시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헌장 (The European Charter for the Safeguarding of Human Rights in the City)>을 2000년에 만든바 있고, 현재 유럽의 350여개 이상의 도시들이 이 헌장을 비준하고 도시 행정에서 실천하고 있다.⁷⁾ 이 헌장의 주요 내용은 1948년의 유엔인권선언 및 1950년의 유럽인권협약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6)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는 올해 '전태일다리 이름짓기 범국민 캠페인'을 벌인바 있다. 전태일 열사의 생일인 2010년 8월26일부터 기일인 11월13일까지 80일 동안 매일 8명의 인사가 현재 청계천 6가에 있는 다리 (임시적으로 붙여진 이름은 버들다리) 를 전태일 다리로 명명할 것을 촉구하는 이른바 808 행사를 마쳤다. 그 결과

7) <도시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헌장> 전문은 <http://www.comune.venezia.it/flex/cm/pages/ServeBLOB.php/L/EN/IDPagina/2198> 에서 볼 수 있다.

Rights) 에 근거한 것으로, 특히 인권 보호에 있어서 도시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 헌장의 제 1조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정의하고 있는데 “도시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집합적 공간이며, 도시 거주자들은 그들의 정치적·사회적·생태적 발전을 위한 권리를 가진 동시에 연대의 의무가 있다” 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 차원의 움직임 외에도 개별 도시 차원, 각 나라 차원, 세계적 차원에서 도시에서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들이 나타나고 있다. (강현수, 2009)

<표. 4> 도시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헌장의 구성 체계

<p>제 1 장. 일반 조항</p> <p>제1조. 도시에 대한 권리</p> <p>제2조. 권리의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p> <p>제3조. 문화, 언어,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p> <p>제4조. 가장 취약한 집단 및 시민의 보호</p> <p>제5조. 연대의 의무</p> <p>제6조. 국제적 도시 협력</p> <p>제7조. 보충성의 원칙</p> <p>제 2 장. 도시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p> <p>제8조. 정치적 참여의 권리</p> <p>제9조. 결사 집회 시위의 권리</p> <p>제10조. 개인과 가족 생활의 보호</p> <p>제11조. 정보에 대한 권리</p> <p>제 3 장. 도시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p> <p>제12조. 사회 보호 공공서비스에 대한 일반 권리</p> <p>제13조. 교육에 대한 권리</p> <p>제14조. 노동에 대한 권리</p> <p>제15조. 문화에 대한 권리</p> <p>제16조. 가정에 대한 권리</p> <p>제17조. 건강에 대한 권리</p> <p>제18조. 환경에 대한 권리</p> <p>제19조. 조화로운 도시 발전에 대한 권리</p> <p>제20조. 도시에서 이동 및 평온에 대한 권리</p> <p>제21조. 여가에 대한 권리</p> <p>제22조. 소비자의 권리</p> <p>제 4 장. 민주적 지방 행정과 관련된 권리</p> <p>제23조.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p> <p>제24조. 개방성의 원칙</p> <p>제 5 장. 도시에서 인권의 실행을 위한 기제</p> <p>제25조. 정의의 지방행정</p> <p>제26조. 도시 정책</p> <p>제27조. 예방 수단</p> <p>제28조. 조세와 예산 기제</p> <p>최종 조항</p> <p>헌장의 법적 의의와 적용을 위한 기제</p> <p>부칙</p>
--

그렇다면, 도시 차원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인권이나 국민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라는 삶의 터전, 즉 일상생활의 공간에서의 인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권보다 더 구체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주장될 수 있다면, 서울 광장에서 집회의 자유는 도시에 대한 권리로 주장될 수 있다. 사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서울 광장에서는 잔디를 보호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제약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요구함과 동시에, 서울시 주민으로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이용자로서, 서울 광장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권의 보장 단위이자 인권의 보장 주체는 바로 국가였다. 그런데 국가보다 더 하위 공간 단위인 도시나 지역이 인권의 보장 단위가 된다면 주거권, 보행권 등 주민밀착형 권리는 사실 국가보다는 도시가 더 잘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국민국가도 여전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도시나 지역이 모든 것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오랜 중앙집권의 경험을 갖고 있고 사람들의 영토적 정체성이 지방보다는 국가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또 도시에 대한 권리는 각 도시의 상황에 따라 특수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보편성에 일부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서울에서 필요한 도시에 대한 권리와 지방 중소도시에서 필요한 도시에 대한 권리가 다를 수 있고 또 달라야 한다. 결국 중앙정부를 무시하고, 또 보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도시에 대한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편적 인권을 보편적 인권대로, 각 도시에서는 각 도시 상황에 필요한 도시에 대한 권리를 함께 동시에 주장하는 것이다.

5. 맺음말

며칠 전 모 재벌그룹 회장이 노동자를 야구 방망이로 폭행하고 이른바 “매 값”이라는 명분의 돈으로 문제를 무마하려는 사건이 폭로되었다. 이런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정의 관념에 반하기 사건이기 때문에 쉽게 전 국민의 공분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도시에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무수히 많은 사건 사고들은 정의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고 묵인되거나 문제시되지 않고 있다.

진보적 도시 연구가 해야 할 일은 다양한 도시의 일상 사안들을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사안을 폭로하고 이것의 개선을 실천의 과제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권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담론 그 자체가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담론은 사회적 실천을 발생시키고 그 실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권리와 정의 담론은 그 자체로 대중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진보적 운동들과 정책들이 만들어 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진보적 도시 연구자들은 경제 정의, 교육 정의, 문화 정의, 여가 정의, 공간 정의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 담론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생산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진보적 도시 연구자들은 도시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의 목록을 확대시키고, 주민들이 스스로를 권리의 주체로 새롭게 자각하는 계기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미 벌써 우리의 도시에서는 정의와 권리를 앞세운 다양한 실천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정의와 관련하여 도시 단위보다는 국가 단위를 목표로 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제 정의를, <환경정의시민연대>에서는 환경정의와 공간정의를 운동의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도시에서의 정의와 관련된 학술적 논의들도 많지는 않지만 단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변영진 1994, 윤혜정 1994, 조명래 2000 등) 환경 정의와 관련해서는 제법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었다.

(최병두, 2010 등)

권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엠네스티>,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 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이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도시 차원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운동들 역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한국도시연구소> <주거권운동네트워크> 등을 중심으로 주거권 운동이, <녹색교통운동>과 <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등을 중심으로 보행권과 이동권 확보 운동이 진행되었다. 광주, 경남, 전북에서는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학술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같은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도시 차원의 운동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부터 정의와 권리에 대한 관점이 우리의 진보적 도시 연구에 보다 심층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현수 (2009)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운동의 흐름", 『공간과 사회』 통권 제 32호, pp. 41-88

강현수 (2010) "권리와 정의 담론 및 관련 정책을 통해 지역 현장에서 조직된 주체" 『5 18과 미완의 민주화 2010년 학술단체협의회 학술대회 자료집』

강현수 (2010) 『도시에 대한 권리』 책세상 (미출간 원고)

변영진 (1994) 존 롤즈 사회정의론의 정책규범화에 관한 연구 :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정책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 논문

서영표 (2009) 『런던 코윈: 지방사회주의의 실험과 좌파 정치의 재구성』, 이매진

윤혜정 (1994) J. Rawls의 정의개념에 관한 시론 :도시계획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서울시정연구 제 2권 제2호 pp.83-99

이지원 (1999), "현대 일본의 자치개혁운동-혁신자치제와 시빌미니엄을 중심으로", 서울대 사회학 박사 학위논문

조명래 (2000) 공간의 정의와 생태문화운동 : 용산기지 시민생태공원화 운동을 사례로 문화과학 제 24호 pp.297-322

최병두 (2010) 『비판적 생태학과 환경정의』, 한울

Brenner, N. (2000) "The urban question as a scale question: reflections on Henri Lefebvre, urban theory and the politics of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24, No. 2 pp.361-378 .

Brenner N. and Theodore, N. (2002) "Cities and the geographies of 'actually existing neoliberalism'," *Antipode*, Vol. 34, No. 3 pp 356-386.

Dikeç, M. (2002), "Police, politics, and the right to the city", *Geojournal* Vol. 58 No. 2-3. pp. 91-98

Dikec, M. (2001) "Justice and the spatial imagin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33, No. 10. pp.1785-1805

Fainstein, S (2010) *The Just City*, Cornell University Press

Fraser, N (2008) *Scales of justice: Reimagining political space in a globalizing world* Columbia University Press

Friedmann, J. 1987, "The right to the city", *Development Dialogue*, Vol. 1, pp. 135-151

Friedmann, J. 2002, *The Prospect of Cities*, Univ. of Minnesota Press

Harvey, D. (1973), *Social Justice and the Cit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국역> 데이비드 하비 저, 최병두 역 1983, 『사회정의와 도시』, 종로서적출판부

Harvey, D. (1992) "Social justice, postmodernism and the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16, No. 4, pp. 588-601

Harvey, D. (1996)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Oxford: Blackwell

Harvey, D. (2009) *Social Justice and the City*, University of Georgia Press; Revised edition

Harvey, D. (2000) *Spaces of Hope*, Univ. of California Press, <국역> 데이비드 하비 저, 최병두 외 역, (2001) 『희망의 공간』, 한울

Henderson, G. and Waterstone, M. (2008) *Geographic Thought: A Praxis Perspective* Routledge

Henderson, G. and Waterstone, M. (ed) (2009), *Geographic Thought: A Praxis Perspective*, Routledge

Holston, James 2001 Urban Citizenship and *Globalization. In Allen J. Scott (ed.), *Global City-Regions: Trends, Theory,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pp. 325-348.

Jhering, Rudolf (1946) *Der Kampf um das Recht*, , 루돌프 폰 예링 저, 윤철홍 옮김, (2007) 『권리를 위한 투쟁』, 책세상

Lefebvre, H. (1968) *Le droit à la ville*. Paris: Anthropos

Lefebvre, H. (1973) *Espace et politique. - Le droit à la ville II*. Paris: Anthropos.

Lefebvre, H. (1974), *La production de l'espace*. Paris: Anthropos. <English translation> (1991), (Translated by Donald Nicholson Smith) *The Production of Space*, Cambridge, MA. Blackwell,

Lefebvre, H. (1996), Kofman, E. and Lebas, E. (eds and translators) *Writings on Citie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Marcuse, P. (ed.), (2009) *Searching for the Just City: Debates in Urban Theory and Practice* Routledge

Mitchell, D. 2003, *The Right to the City: Social justice and the fight for public space*, New York, London, The Guilford Press

Mitchell, D. 2003, *The Right to the City: Social justice and the fight for public space*, New York, London, The Guilford Press

Mouffe, Chantal. (1992). "Democratic Citizenship and the Political Community." in Chantal Mouffe (ed). *Dimensions of Radical Democracy*. New York: Verso.

Purcel, M. (2008), *Recapturing Democracy: Neoliberalization and the struggle for alternative urban futures*, Routledge

Purcell, M. (2002), "Excavating Lefebvre: the right to the city and its urban politics of the inhabitant", *Geojournal*, Vol. 58, pp.99-108

Purcell, M. (2003), "Citizenship and the right to the global city: reimagining the capitalist world order,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27. no. 3, pp. 564-590.

Rawls, J. A (1971) *Theory of Justic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 Press <국역> 존 롤즈, 황경식 역, (2003), 『정의론』 이학사

Sandel, M. (2009)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Farrar, Straus and Giroux <국역> 마이클 샌델 저, 이창신 역, (2010)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Smith D. M. (1994) *Geography and social justice*. Oxford: Blackwell
 Smith D. M. (2000) "Social Justice Revisited",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32. No.7 pp1149 - 1162
 Smith D. M. (2000), *Moral Geographies. Ethics in a World of Difference*, Edinburgh University Press,
 Soja, E. W. (2010) *Seeking Spatial Justice*, Univ Of Minnesota Press
 UNESCO, UN-HABITAT, ISS, (2005) Discussion Paper: Urban Policies and the Right to the City
 Young, Iris M. (1986), "The Ideal of Communit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Social Theory and Practice* Vol. 12, No. 1 pp. 1-26,
 Young, Iris M. (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Univ. Press
 Young, Iris M. (2000) *Inclusion and Democracy*, Oxford. Univ. Press

21세기 도시권과 도시정의의 철학 -도시권의 확장과 기본소득-

곽노환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⁸⁾

1. 들어가기: 도시와 정의의 만남

1968년에 르페브르(Lefebvre)는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를 출간하였다. ‘도시에 대한 권리’(앞으로 줄여서 ‘도시권’으로 명명함)란, 자본주의적인 도시화에 대항하고 이러한 도시화가 초래한 조건을 활용하며 이를 넘어서서 지구화시대에 가능한 실험적 유토피아에 대한 요구로 제시된 이론적 기획이다(Lefebvre, 1968: 151-152).¹⁾

그는 이제 잉여가치가 산업자본의 ‘일차적 순환’과 관계를 가지는 부동산 투자라는 ‘자본의 이차적 순환’을 통해서도 실현되며, 이 ‘이차적 순환’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면서 도시공간을 변화시키며 생산하는 지배적 힘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달리 말하면, 자본주의 도시는 소비의 장소이며 동시에 장소의 소비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Lefebvre, 1968: 170). 물론 그에 따르면, 도시공간은 자본의 권력에 의해 지배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안적인 공간 전유와 생산의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 시대의 도시공간은 ‘모순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Lefebvre, 1974: 292).

그의 도시권 개념은 교환가치와 이윤 추구의 자본주의적인 공간생산을 넘어서서, 만남의 공간과 사용가치를 우선시하는 대안적인 작품으로서의 도시공간을 전유하는(appropriate)²⁾ 것을 함의하며(Lefebvre, 1968: 158) 주변으로 쫓겨나 도심을 강탈당하고(dispossessed) 수탈당한(expropriated) 사람들이 이를 다시 전유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도시권은 국적에 따른 시민권을 넘어서서, 자국의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이주자 등을 포함하는 도시거주자(citadin)의 모두의 권리이며 지구성을 지향한다(Lefebvre, 1968: 194). 따라서 국적에 따른 시민권에 제한된 초기의 인권 개념을 크게 확장하는 효과를 갖는다(강현수, 2009: 55).

나아가 도시권은 도심공간을 전유하고 생산할 권리로 한정되지 않고 ‘거주생활(inhabit)’의 권리를 포함한다. 그는 소비편의적이고 기능적이며 획일적인 ‘거주지(habitat)’와 ‘거주생활(inhabit)’을 개념적으로 구분한다. 자본주의적인 소비의 장소이자 주거지인 도시의 거주지와 달리, 도시에서의 ‘거주생활’은 도시생활과 도시의 삶의 방식의 특이성들(singularities)을 포괄한다(Lefebvre, 1968: 109). 곧 ‘거주생활’의 권리는 도시공간뿐만 아니라 도시에서의 삶을 작품으로 전유하고 생산할 권리를 뜻한다. 좌파 집단이나 정당들도 더 많은 싼 주택에 대한 요구에 그치는데, 이는 단지 기능적인 거주지를 요구하는 것

8)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HK교수

1) 이러한 르페브르의 가능한 실험적 유토피아 개념은 맑스의 “인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만 제기한다”는 언급에 대한 재해석에 기초한 것이다. 르페브르는 이를 유토피아적인 ‘가능함-불가능함’의 지평으로 독해한다(Lefebvre, 1968: 181).

2) 르페브르는 ‘공간의 전유’를 개념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사적소유와 교환가치에 반하여 사용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공간생산을 ‘공간의 전유’라고 부른다. 이는 상품생산물의 생산과 달리 도시공간을 작품(oeuvre)으로서 향유하고 생산하는 것을 지칭한다(Lefebvre, 1968: 173-174). 이러한 공간의 전유 권리는 그의 도시권 개념에서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비해 도시공간을 작품으로 보는 르페브르에게 '거주생활'은 개인과 집단이 그들의 존재조건을 전유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을 전제한다(Lefebvre, 1968: 79). 이 거주생활은, 자본주의적인 축적의 또 다른 계기인 사적인 투기와 수탈의 공간인 거주지에 대한 대척점을 이룬다. 그런데 이처럼 거주생활은 물리적 공간의 전유만으로 제한될 수 없다. 거주생활은 삶 자체를 자기의 것으로 그리고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거주생활의 권리를 포함하는 도시권은 도시공간의 전유만이 아니라 변형되고 혁신된 도시생활(urban life)의 권리로 정식화될 수 있다(Lefebvre, 1968: 158). 그리고 도시공간과 도시생활을 개인과 집단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또한 자본주의적인 동질의 추상적이고 지배적인 공간생산과 달리 차별화된 공간생산이기도 하다(Lefebvre, 1968: 88; 1974: 352f; Harvey, 2000: 251).

이처럼 강탈당하고 수탈당한 도시공간 및 도시생활의 전유를 함의하는 그의 도시권 개념은 도시공간 및 도시생활의 평등한 정의와 전유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은 인권 및 사회정의의 개념과 연계되어 실천적으로도 큰 반향을 얻고 있다. 실천적으로는 브라질이 2001년에 연방차원에서 주민참여 등 민주적 권리와 무허가 정착촌의 양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법(City Statute)을 제정하였으며, 몬트리올에서는 도시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지향하는 내용의 도시헌장이 2006년부터 발효되었다(강현수, 2009: 67-68).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권을 넘어서서 도시의 평등한 이용권을 새로운 권리를 담은 도시권 세계 헌장(World Charter of the Right to the City)을 제정하려는 운동도 힘을 얻고 있다(강현수, 2009: 71-73 참조).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하비(Harvey, 2008)와 미첼(Mitchell, 2003) 등이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을 통해 인권과 사회정의의 새로운 차원을 체계화시키고 확장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³⁾ 특히 하비는 상품생산을 통한 자본의 축적이 도시공간 곧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투기를 통한 자본축적으로 확장된다고 본다. 곧 도시공간에 대한 투자는 일시적이기는 해도 산업자본의 초과축적에 대한 치료제가 되며 동시에 더 큰 모순과 위기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는, 19세기 오스망(Haussmann)이 부채를 통한 빠리의 도심재개발로 과잉축적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해소하면서 더 큰 자본축적의 위기를 초래했듯이, 미국에서도 부동산투기소득의 증가를 동반하는 부채에 의해 지탱되는 도심건설과 주택 및 사무 공간의 건설을 통해 국내소비시장을 떠받침으로써 1990년대 후반의 실리콘밸리의 위기를 지연시켰으나 결국 2000년대 후반의 모기지 위기를 초래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는, 도시의 공간적 조정(spatial fix)을 통한 부동산양도차익과 지대의 발생은 생산과정에서의 착취와 달리 '강탈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의 한 형태라고 본다(Harvey, 2008: 26-29 및 39). 그에 따르면, 특히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강탈에 의한 축적'체제이다(최병두, 2009: 34-35). 그리고 도시공간을 강탈당한 사람들은 다시 이를 누구나 평등하게 향유하고 생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유할 권리를 갖는다(Harvey, 2000: 251).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도시의 정의이자 도시권이다. 하비는 르페브르의 도시권을 이러한 공간적 '강탈에 의한 축적'에 저항하는 이념으로 체계화시켰다. 곧 그에게 도시권은 "도시화와 잉여생산 및 사용 사이에 필요한 연계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슬로건이자 정치적인 이상이다(Harvey, 2008: 40). 이 도시권은 인권과 사회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앞의 글: 23). 그러나 그는 사회정의를 영원한 정의와 도덕과 관련시키기보다는 사회발전을 조건으로 하는 역사적·사회적인 것으로 간주하거나(Harvey, 1973: 15),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앞으로의 변화에 열려있는 보편성으로 본다(Harvey, 2000: 247-248). 하비의 도시권 개념은, 현재 가능성에 뿌리를 둔 열린 보편성과 특수성이 결합된 자신의 보다 포괄적인 '시공간적 유토피아주의(spatiotemporal utopianism)' 내지 변증

3) 미첼은 도시권이 진보적이며 정의로운 세계의 비전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Mitchell, 2003: 6). 나아가 그는 하비의 '시공간적 유토피아'가 모두에게 열린 정의로운 공적 공간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본다(앞의 책: 233-236). 이처럼 그는 도시권을 '공적 공간에 대한 도시거주자의 평등한 권리' 내지 '정의로운 공간'에 대한 권리로 구체화한다. 그리고 노숙자 등 도시의 소수자를 이러한 도시권의 주체로 정식화한다(앞의 책: 118 이하).

법적 '유토피아'(Harvey, 2000: 196)의 특수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르페브르와 하비는 도시공간의 수탈 내지 강탈 개념과 도시권 개념을 통해, 자본주의적인 도시화가 자본축적의 필수적인 계기이면서도 동시에 축적위기의 가능성이 집약되는 모순적인 공간조정 과정임을 밝혔다. 이는 자본축적과 공간의 상품화를 연계시킴으로써, 맑스의 자본축적이론을 확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그들은 국적에 따르는 시민권을 넘어서는 도시권을 통해 인권 및 사회정의의 개념을 구체화시키고 확장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도시권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전통적인 노동자중심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서 도시공간을 강탈당한 모든 도시거주자를 도시권과 변혁의 주체로 재구성할 가능성을 남겨놓았다.

하지만 그들의 도시권 개념이 사회정의, 지구·지방적 연계성, 21세기 도시권과 변혁의 주체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많은 지평을 열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하면서, 그들의 도시권 개념을 새롭게 확장하고 재구성하고자 한다.

2. 도시권·인권·기본소득과 정의

르페브르나 하비는 모두 초역사적인 인권과 정의 개념을 거부할 뿐이지, 역사적·사회적으로 가능하며 실현가능한 인권과 정의의 개념은 오히려 적극 옹호한다.⁴⁾ 그리고 그들의 도시권 개념은 이러한 사회역사적인 인본주의적인 인권과 사회정의의 개념을 도시공간과 도시생활로까지 확장하는 것이기도 하다(Lefebvre, 1968: 150; Harvey, 2008: 23). 이처럼 인권과 정의의 개념이 사회역사적인 것이라면, 인권과 정의에 관한 담론장은 가변적일뿐만 아니라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과 개인들의 논쟁의 장이기도 하다. 르페브르와 하비의 도시권 개념이, 지금까지 자본주의적으로 수탈 내지 강탈당한 도시공간과 도시생활을 새로이 모든 도시거주자가 평등하게 전유할 권리로 정식화된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물론 엥겔스와 달리, 그들은 자본주의에서 도시공간들이 모두 자본지배의 공간일 뿐이며 도시권이 자본주의 이후의 시대에만 실현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1) 인권의 역사성과 한계

실제로 인권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확대되어 왔다. 제1세대 인권이 시민적 자유권에 중점을 두었다면, 제2세대 인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평등권으로까지 확장되었고, 제3세대 인권은 환경권, 평화권, 인류공동유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괄하기에 이르렀다(강현수, 2009: 46에서 재인용). 유엔에서도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이래 1966년에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일명 사회권조약)을 채택하였다(발효는 1976년). 그리고 이 조약 중 주거와 관련된 문제를 주요의제로 하는 인간정주센터(the United Nations Centre for Human Settlement: Habitat)가 설립되어 1976년과 1996년에 세계주거회의를 개최하고 주거권이 기본적인 인권임을 명시하였다(앞의 글: 47-48에서 재인용). 이처럼 UN 등 국제기구에서도,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의 한 요소인 '거주생활'(inhabit)권과 유사한 주거권을 인권의 일부로 수용하면서 인권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이러한 주

4) 엥겔스는 『주택문제에 관하여(Zur Wohununsfrage)』에서 프루동(Proudhon)과 그의 추종자인 뮐베르거(Mülberger)의 '영원한 정의(ewige Gerechtigkeit)' 개념을 비판하고 있다(MEW 18: 218 및 274). 이에 앞서 맑스도 『자본』 1권에서 프루동이 상품생산에 상응하는 법적관계로부터 '영원한 정의'라는 이상을 도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메리필드(Merrifield)는 맑스가 윤리와 정의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지배계급을 합법화시키는 권력으로 작동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Merrifield, 2002: 312-313). 하지만, 당시의 대도시 주택난에 대해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장악할 때까지 어떠한 해결책도 없다는 엥겔스의 견해에 대해서 메리필드는 적절하게 비판하고 있다(앞의 책: 113-114).

거(habitat)의 권리는 르페브르가 제시한 거주생활의 권리에 비해 소극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UN 세계인권선언의 제3조는 모든 사람이 생명(존)권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생존수단이 결핍되어 있다면 생명(존)권은 공허한 말이 된다. 그러므로 이 생명(존)권은 물질적인 생존수단에 대한 권리를 통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Wohlgenannt, 2006: 28). 이와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은 생계노동에 대한 권리 및 이와 연동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응답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2조는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곧 이어 제23조는 모든 사람이 노동의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제25조 1항은,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곧 모든 사람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결핍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는 한, 노동의 권리와 이에 연동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1948년에 채택된 UN 세계인권선언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볼게난트의 지적대로, 당시 서구는 거의 완전고용이 이루어진 노동사회였고 따라서 서구가 지배하던 UN은 당시 서구의 노동사회 관념을 수용하여 지구의 재화에 대한 각자의 지분권을 생계노동 및 이와 연동된 소득에 결부시켰기 때문이다(Wohlgenannt, 2006: 30).

이처럼 인권의 개념은 역사와 사회적 조건에 따라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21세기 사회는 가난한 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계노동이 갈수록 단절적이며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불안정노동 및 실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동 및 이와 연동된 사회보장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앞의 곳). 이는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의 경제권 조항이 더 이상 21세기의 인권상황에 부합하지 못하는 공문구가 되었음을 뜻한다. 더구나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제23조 3항은 당시 시대상에 따라, 여성·청소년(년)·아동 등을 남성노동자의 부양가족으로 표준화하여 남성노동자의 소득보전 및 가족단위의 사회복지를 통해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급감하여 더 이상 표준가족이 아니게 된 오늘날, 세계인권선언문의 제23조 3항은 시대에 퇴행적인 사문구가 되어버렸다. 세계인권선언을 모태로 하여 1960년대 이후 여성차별철폐조약, 이주노동자권리조약 등이 보충되었음을 감안하면, 노동권 및 이와 연동된 사회복지권은 시대착오적인 인권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세계인권선언의 생명(존)권을 보충하는 조약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 1976년부터 발효되었으나, 여기서도 적절한 의식주를 포함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는 여전히 노동권과 연동된 사회복지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 조약 중 주거권이 강화되었음에 비해 노동과 연동된 생계소득의 원칙은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다.

2) 인권의 확장: 도시권과 기본소득

앞서 보았듯이 르페브르의 도시권은 이주자를 포함한 도시거주자(citadin) 모두의 권리인 한에서, 그리고 세계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국적중심의 시민권에 기반한 인권개념을 확장하는 계기를 갖고 있다(Lefebvre, 1996: 196). 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넘어서서 도시거주자 모두의 인권 확장을 지향하는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은 이러한 생명(존)권의 퇴행을 넘어설 요소를 맹아적으로 가지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에는 단지 주거권에 한정되지 않는 거주생활의 권리와 변형되고 혁신된 도시생활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거주생활의 권리란 도시공간과 도시생활을 향유하며 생산할 권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도시거주자에게 주어지는 거주생활의 권리는 주거권 및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생계에 필수적인 재화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를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한다. 이 점에

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생명(존)권 내지 삶의 기회에 대한 권리를 주로 ‘생활임금(living wage)’을 통한 노동소득 상승을 통해 구체화한 하비의 견해는 시대에 뒤쳐진 인권선언의 한계를 넘어 서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는다.

볼게난트는 불안정노동과 실업이 확산된 오늘날에는 생명(존)권이 더 이상 노동과 연동된 소득 및 사회복지들을 통해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지구의 자원과 인류사적으로 전승된 문화, 지식, 능력, 과학 및 기술 등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다. 따라서 생명(존)권은 필연적으로 지구의 자원과 인류의 유산에 대한 각자 지분에 대한 권리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곧 모든 사람들은 지구의 자원과 인류유산에서 유래하는 경제적 부에 대해 무조건적인 수급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산출된 경제적 부에서 노동소득을 제외한 일정비율이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듯 불안정 노동과 실업이 만연한 시대의 생명(존)권은 노동과 연동된 소득과 사회복지의 틀을 벗어나서,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통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정되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Wohlgenannt, 2006: 28-30).

3) 도시권의 확장과 기본소득

이러한 기본소득의 권리는 지구적인 거버넌스나 국가단위를 통해 보장될 수도 있지만, 도시공동체나 지방자치체를 통해서도 상당부분 보장될 수 있다.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경기도와 서울시 등의 보편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르페브르나 현재 서구의 진보적인 도시공동체에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도시공간 및 도시생활의 권리 곧 도시권을 구체적으로 확장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⁵⁾ 나아가 친환경 무상급식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적인 네트워크를 새로이 형성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브라질의 꾸리찌바 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말 무상대중교통도 도시권을 구체적으로 확장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를 확대하여 도시공동체나 지방자치체 차원에서 무제한적인 보편적인 무상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르페브르의 도시권의 이상에 더욱 걸맞을 것이다. 더구나 보편적인 무상대중교통은 도시의 공기를 맑게 하며,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더 많은 보행자 전용길과 광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파급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다시 도시권을 순환적으로 확대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재정은 도시공동체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도 하다. 이러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무상대중교통은 공동임대주택의 확충 등과 더불어 도시나 지자체 재원을 통해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거주생활의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들은 도시나 지자체 거주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⁶⁾

5) 현재 지구상에서 의무교육기간 동안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최영찬, 2010: 4). 한국의 경우 지자체차원에서 보편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점차 확대 실시될 예정이며, 이는 앞의 두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보다 앞서서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6) 현물기본소득의 개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옹호자들 사이에도 견해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 따라, 기본소득을 “자산조사나 노동의무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무조건적인 소득”(basicincome.org/bien)이라고 정의한다면 현금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현물기본소득도 있을 수 있다. 특히 판 빠레이스(Van Parijs)는, 수급자들이 각자 삶을 선택할 자유를 촉진하기 위해 기본소득의 상당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물의 형태나 지역화폐 등 특수화폐로 지급될 수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교육, 의료 등의 현물기본소득은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Vanderborght/Van Parijs, 2005: 38; Ackerman/Alstott/Van Parijs, 2006: 23). 그리고 그는 사회적으로 산출된 경제적 부를 통해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보편재화를 기본소득에 포함시킨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교육 및 의료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공기정화를 통한 맑은 공기, 거리의 건설·유지·청소, 보행자 전용길, 공원, 스퀘시시설, 오페라티켓, 응급서비스 등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현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기본소득이다(Van Parijs, 1995: 42-45). 필자는 이러한 판 빠레이스의 견해를 수용하여, 무상급식, 무상대중교통, 무상보육, 공동임대주택 등을 현물기본소득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카글 등 무상현물형태를 기본소득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는 기본소득론자들도 대체로 현금기본소득과 더불어 교육 및 의료 포함

그리고 이는 인권 및 르페브르나 하비의 도시권을 더욱 구체화하고 확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물론 도시권의 확장을 가능케 하는 '현물기본소득은 이 외에도 많은 경우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무상보육, 노약자 돌봄노동서비스 등등은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도시나 지방공동체의 재정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현물기본소득의 일부라 할 수 있으며, 이 종류는 사회경제적인 발전에 따라 점차 늘어날 것이다. 인권의 역사성을 인정하면서 인권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르페브르나 하비의 경우, 도시권에 대해서도 역사성과 확장가능성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공동체와 지자체에서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현물기본소득의 권리는 도시권의 일부를 이룰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화시키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이룰 것이다. 이러한 도시권의 확장은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 보다 효과적이며 풍부하게 실현될 수 있지만, 르페브르의 말대로 자본주의 시공간 안에서도 자본주의를 넘어설 시공간이 될 수 있는 '실험적 유토피아'(Lefebvre, 1968: 151)의 기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안사회를 향해 이처럼 트여 있는 도시권의 시공간은, 자본과 국가에서 벗어난 삶의 형식과 대안적인 사회성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공간과 수단을 최대한 확대하자는 앙드레 고르(Andre Gorz)의 제안과도 궤를 같이 한다(Gorz, 1997: 111). 고르는 자본주의사회의 발전 자체에 자본주의 사회 건너편의 가능성과 맹아가 주어져 있다고 본다. 그 중의 하나가 실업과 불안정노동이 급증하며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한 오늘날 모두에게 충분한 기본소득을 보장할 가능성이다(Gorz, 1997: 112). 그리고 그 효과 중의 하나는 자본과 교환가치에 종속된 임노동의 시공간을 자유롭고 자발적인 활동의 시공간으로 전환할 조건을 급속히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Gorz, 1997: 115-120).

이러한 고르의 견해는, 자본과 교환가치의 도시공간과 도시생활을 만남과 사용가치를 우선시하는 도시공간과 거주생활의 전유로 전환시키자는 르페브르의 제안과 일맥상통한다(Lefebvre, 1968: 158). 실제로 고르는 기본소득을 통해, 맑스가 강조한 각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자유시간을 확대할 조건이 창출될 뿐 아니라(Gorz, 1997: 129-144), 실천적인 저항과 실험 그리고 대안적인 사회성과 사회적인 대안들의 공간이 창출될 수 있다고 본다(Gorz, 1997: 145). 특히 도시혁신정책은 다른 사회의 발효과정 에 결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앞의 곳). 그에 따르면, "우리는 도시의 변화를 통해 사회변화의 지렛대와, 인간들이 자신이 맺는 관계들을 체험하며 자신들의 세계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는(bewohnen) 법을 제공할 수 있다."(Gorz, 1997: 146) 이처럼 시간의 전유를 넘어서서 도시공간과 도시생활의 혁신으로까지 변혁의 영역을 확장한 고르의 견해는 도시공간과 도시생활의 전유를 주장한 르페브르 내지 구체적인 시공간적 유토피아주의를 지향하는 하비의 기획과 정확히 일치한다.

고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판 빠레이스가 현물기본소득이라고 부른 것들을 도시와 연계시킨다. 그는, 모두가 자립적인 활동을 위해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들로 일종의 도시적인 현물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집, 공원, 집회장소, 스포츠시설, 음악당, 학교, 극장, 도서관, 비디오텍, 만남의 시설을 갖춘 주거건물, 놀이방,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급식소 등을 갖춘 다중심의 지적인 도시들이 살만한 세계의 재건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한다(앞의 곳). 그리고 변혁을 위한 '새로운 주체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앞의 책: 147).

그리고 이러한 대안의 도시 만들기와 새로운 주체성의 실험으로서 1920년대 독일에서 시작되고 1930년대의 대공황기에 북미로 전파되었으며 1980년대 말 이후 유럽, 북미,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새로운 형태로 발전한 협동공동체(Kooperationsringe)와 지역교환거래제도(LETS: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의 예를 제시한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협동공동체가 마을단위의 경제로 되돌아가는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시도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보장과 연계되어야 한다.⁷⁾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한 보편적인 무상복지와 공공재의 확대를 '좋은 삶'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본다(Kargl, 2006: 133-136).

7) 앙드레 고르뿐만 아니라 판 빠레이스도,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을 국가단위의 공간뿐만 아니라 도시 내지 지방의 정치공동체

첫째로, 이러한 마을 단위의 협동공동체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체 성원들이 거시사회의 노동을 중단하고 협동공동체에서 노동하고 활동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앞의 책: 153). 마을과 도시단위의 (현물)기본소득과 거시적인 단위에서의 기본소득은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 준다. 둘째로, 지방단위를 넘어선 거시사회적인 기본소득을 매개로, 폐쇄적인 위험성이 있는 '지방의 공동자산(lokales Gemeingut)'과 지방공동체에 매몰되지 않고 '일반적인 공동자산(allgemeines Gemeingut)' 및 지구적으로까지 열린 사회성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확장되기 때문이다(앞의 책: 159). 이처럼 거시사회 및 지방단위의 기본소득과 연계된 도시혁신과 협동공동체의 공동기획 및 '공동의지(Gemeinwillen)' 형성을 통한 '새로운 주체성'의 창출은, 르페브르의 도시공간과 도시생활을 작품으로 만들 권리 특히 그 중에서도 거주생활(inhabit)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르페브르나 하비가 도시권과 기본소득을 직접 연계시키지는 않았지만, 현물 및 현금 기본소득은 도시권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시권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21세기의 도시권은 기본소득과 연계하여 확장될 필요가 있다.

4) 도시권 및 기본소득과 정의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인 현물기본소득을 통한 인권 및 도시권의 확장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현물을 포함하는 기본소득은 기존의 착취와 수탈을 환수하여 모든 사회성원에게 평등하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롭다는 주장과 다른 한편으로 헌신적인 노동자에 대한 게으른 자의 착취 내지 수탈과 기생(Parasitismus)을 부추기며 따라서 정의에 배치된다는 반론이 있다. 이 문제는 기본소득과 정의의 관련을 다루는 정치철학과 경제철학에서 가장 커다란 논쟁주제이기도 하다. 또한 도시공간에 대한 '강탈에 의한 축적'에 대비되는 하비의 도시권 개념도 정의의 문제와 결부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도시권과 역사지리유물론은 강탈되고 사유화된 도시공간을 환수하여 이에 대해 집단적인 통제권을 확립하며, 사적 자본의 이윤을 사회성원 모두의 집단적인 자원향유로 전환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Harvey, 2000: 248-250). 곧 기본소득은 아니더라도, 하비의 도시권과 시공간적 유토피아주의는 강탈된 사회적 자산을 사회전체성원의 것으로 되돌리고 이에 기초하여 생산 및 잉여의 사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며(Harvey, 2008: 37) 잉여의 일부를 모든 성원들의 집단적인 자원향유로 전환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Harvey, 2000: 250) '강탈 vs. 정의'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기본소득권과 하비의 도시권은 이처럼 자본의 착취나 수탈 내지 강탈을 부정의한 것으로 보며, 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평등하고 정의로운 소득이나 향유로 전환하려는 기획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단 하비의 도시권과 시공간적 유토피아주의에 비해, 기본소득권은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다 많은 소득을 보장하기 때문에, 착취나 수탈을 줄이기보다는 확산시키고 확대시키며 따라서 정의롭지 못하다는 반론에 더 심각하게 마주치게 된다.

이하에서는 기본소득권과 정의가 합치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모순되는가의 주장에 대해서, 판 빠레

단위와 연계시킨다. 나아가 기본소득은 초국적 공간 그리고 심지어 지구적인 공간에서도 실현가능하다고 본다(Vanderborght/Van Parijs, 2005: 39-40, Van Parijs, 2010: 11-22). 지방 정치공동체 차원에서는, 미국의 알래스카와 브라질의 산토 안토니오 도 핀할(Santo Antonio do Pinhal)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현물기본소득만이 아니라 현금기본소득이 실시되고 있다. 또 나미비아의 오미타라 마을에서도 현재 실험적으로 현금기본소득이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기도나 서울에서 점차 확대 실시될 보편적인 무상급식은 부분(현물)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부 도시나 지방 정치공동체의 기본소득이 국가 내지 초국적 공간 또는 지구적 공간에서의 기본소득보다 앞서서 실현된 이유는 진보적 기획이 도시나 지방 등 작은 정치공동체에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실현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나 지방의 정치공동체에서 현금기본소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도시나 지방의 정치공동체에서는 성원들의 직접적인 필요를 더 잘 알 수 있고 재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현물기본소득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곽노완, 2010: 95-96).

이스의 논거와 판 돈젤라(Van Donselaar)의 반론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판 빠레이스는, “사회정의란 스스로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의 평등한 분배”라고 본다(Ackerman/Alstott/Van Parijs, 2006: 39. 인용자에 의해 번역 일부가 수정됨). 여기서 실질적인 자유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그 수단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앞의 책: 40). 판 빠레이스는 이러한 ‘실질적인 자유’의 개념과 평등주의적인 분배 기준을 결합시킨 정의론을 전개한다(앞의 곳). 이처럼 실질적인 자유의 공평한 분배는, 각자가 자신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한 것을 실현할 기회를 가능한 한 최대에 갖게 될 때 달성된다(Van Parijs, 1995: 25). 이처럼 그는 좋은 삶(good life)에 대한 집단적인 특정한 개념에 입각해 정의로운 사회를 규정하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와 달리,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처럼 좋은 삶의 개념을 각자에게 위임한다.⁸⁾ 이처럼 실질적인 자유 내지 기회의 평등한 분배 곧 정의의 실현에서 판 빠레이스가 특히 주목하는 요소는 소득의 분배이다. 왜냐하면 소득은 실질적인 자유 내지 기회를 선택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게 정의의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조건적으로 누구에게나 개인별로 지급되는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the highest sustainable basic income)’을 보장하는 것이다(Van Parijs, 1995: 39). ‘지속가능한’이라는 전제조건을 다는 이유는, 지나치게 많은 기본소득은 경제적 몰락을 초래하여 기본소득의 재원을 소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앞의 책: 38). 이 점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그의 정의 개념은 단지 윤리적인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과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스스로 윤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두 의미가 있는 기획만 정치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Van der Veen/Van Parijs, 2006: 3). 이처럼 그의 기본소득론은 윤리적인 이론에 그치지 않고 경제철학과의 연계되어 있다.

그런데 그에게 기본소득론과 정의론의 연계는 또 하나의 차원을 갖는다. 그것은 착취론의 차원이다. 그에게 착취(exploitation)는 타인의 실질적인 자유 내지 기회를 빼앗는 것이며 따라서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이 정의와 부합하려면 남의 실질적인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판 빠레이스는 로머(Roemer)의 착취 개념을 수정하고 확장하여 새로운 착취 개념을 제시한다.

로머에 따르면, “한 연합체가 생산수단의 1인당 평균지분의 연합체 몫을 갖고 철수하여 최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그 성원들의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나빠지는 되는) 반면 그 연합체의 여집합은 결과적으로 상황이 나빠지게 된다면 (좋아질 수 있다면), 그 연합체는 자본주의적으로 착취당하고 (자본주의적으로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Van Parijs, 1995: 170에서 재인용. 강조는 Van Parijs)

그런데 판 빠레이스는 이러한 로머의 자본주의적인 착취 개념이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지 못하여 모순에 빠진다고 보고 이를 수정한다. 예를 들어 철수한 연합체가 규모의 경제를 누리지 못하여, 생산수단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었을 때보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생산수단이 평등하게 분배되었을 때, 오히려 로머적인 착취가 증가한다. 이는 로머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로머의 자본주의적인 착취 개념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모든 사정이 불변이며 효율성과 가격효과를 사상하고, 사회의 생산수단이 평등하게 분배되었을 때 A의 상황은 좋아

8) 공동체주의는 ‘좋은 삶’ 내지 공통선에 해당하는 실체적인 정의가 있다고 본다. 샌델(Sandel)은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논자들의 한사람이다(Sandel, 2009: 360). 이에 비해 판 빠레이스는 이러한 실체적인 정의 개념에 반대한다. 그는 ‘좋은 삶’에 대한 판단을 각자의 자유에 위임한다. 이런 점에서 판 빠레이스는 자유지상주의와 마찬가지로 ‘좋은 삶’의 실체적 내용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나 판 빠레이스는 각자가 ‘좋은 삶’을 실현할 실질적인 기회를 최대한 평등하게 갖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판 빠레이스는 자유지상주의와도 구분된다. 판 빠레이스는 자유지상주의와 평등주의를 결합한 자신의 입장을 ‘실질적 자유지상주의(Real-libertarianism)’이라고 칭한다. 이러한 판 빠레이스의 입장은 롤스(Rawls)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와 유사하지만, 롤스가 사회성원들이 모두 동의할 정의 개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데 반해 판 빠레이스는 이러한 입장을 거부하며 롤스에 비해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더욱 철저히 견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고 나머지 사람들의 상황이 나빠졌다면, A는 자본주의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다.”(Van Parijs, 1995: 173)

또한 로머는 자본주의적인 착취만이 아니라, 봉건적인 착취 및 사회주의적인 착취 그리고 필요의 착취(needs exploitation)를 각각 차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곧 그에 따르면 사회주의에서도 사회주의적인 착취와 필요의 착취는 여전히 남는다. 판 빠레이스는 특히 로머의 사회주의적인 착취 개념과 필요의 착취 개념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정을 가한다. 수정된 착취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정이 불변이며 가능한 효율성과 가격효과를 사상하고, 모든 자산 곧 양도가능한 부와 양도불가능한 기술들이 평등하게 분배되었을 때 A의 상황이 나아지게 된다면 그는 사회주의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정이 불변이며 가능한 효율성과 가격효과를 사상하고, 모든 자산 및 필요들이 평등하게 분배되었을 때 A의 상황이 나아지게 된다면 그는 필요의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Van Parijs, 1995: 174. 강조는 Van Parijs) 여기서 필요의 착취란 건강과 관련된 착취를 말한다. 곧 장애가 있거나 건강이 나쁠 경우 필요가 커지가 된다. 그래서 평균적인 건강을 갖춘 사람에 비해 그만큼 더 많은 자산을 분배받아야 착취를 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가 평균적인 건강을 갖추었을 경우에 비해 충분히 더 많은 자산을 분배받지 못하면 착취당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처럼 판 빠레이스는 로머처럼 생산수단 등 양도가능한 부만이 아니라 생산성과의 차이를 낳는 양도불가능한 기술 및 필요(또는 건강)로까지 착취의 기반을 확장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로머 이상으로 착취의 기반을 확장한다. 그는 희소해진 일자리도 양도가능한 사회적 자산이라고 보고, 이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해서도 착취 개념을 확대 적용한다. 곧 이전과 달리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똑같이 분배받았을 때, A의 소득이 늘어났다면 이전에 그는 일자리라는 자산을 불평등하게 적게 분배받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착취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체에 결박되어 있어 양도불가능한 자산을 로머가 지적한 기술 및 건강만이 아니라 타고난 천부인 젠더, 인종, 시민권 등으로까지 확장한다(앞의 책: 174-175). 따라서 이러한 착취 논리는 젠더, 인종, 시민권 등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앞의 책: 176-177).

그런데 이 다양한 착취의 규모를 각각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불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양도불가능한 자산을 한 데 모아, 자신이 수정한 ‘비우월적 다양성’ 원리를 적용하여 중립화함으로써 양도불가능한 자산의 불평등에 따른 착취의 격차를 크게 줄이고자 한다. 곧 특정인의 양도불가능한 자산의 총합에 대해서 누구나 만장일치로 나쁜 상황이라고 보게 될 경우에만 그 사람이 양도불가능한 자산에서 착취당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양도불가능한 자산의 피착취자는 장애인 등으로 크게 축소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목적성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앞의 책: 60, 73, 77, 184).

그리고 판 빠레이스는 양도가능한 자산의 불평등(특히 고용지대를 포함한 고소득을 올리는 일자리와 생산수단의 불평등한 분배 등)에 기초하는 착취(특히 고용지대 및 자본소득)에 집중 과세하여 모두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착취에 집중 과세하여 이처럼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시스템은 사회주의보다 착취를 더 잘 극소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더 정의롭다는 것이다(앞의 책: 183).

이처럼 고용지대 및 자본소득 등에 대한 조세를 통한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이 착취를 극소화하고 정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 빠레이스의 주장에 대해 판 돈젤라는 착취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착취자의 숫자와 착취의 규모를 증대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착취(exploitation)가 없고 상호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는 점에서는 판 돈젤라도 판 빠레이스와 견해를 같이 한다(Van Donselaar, 2009: 4-5).

그런데 판 돈젤라는 착취 개념을 판 빠레이스와 달리 정의한다. 그는 가우티어(Gauthier)의 ‘이익을 취하지 않을 원리’로부터 착취(또는 기생 - 그는 착취와 기생을 동의어로 사용한다)의 개념을 차용한다.

이에 따르면, “남이 없거나 그가 나와 관계가 없을 때, 나의 상황이 개선되고 그의 상황은 악화된다면 나는 착취를 당하고 있다.”(앞의 책: 4)

그러나 판 돈젤라는 엘스터(Elster)와 마찬가지로, 판 빠레이스의 기본소득권이 착취를 극소화하고 정의를 극대화하기보다는 거꾸로 착취를 극대화하고 정의를 극소화한다고 결론 내린다(앞의 책: 144).

첫째로, 그는 자연자원의 생산적인 사용에 대한 과세를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이 조달된다면, 기본소득은 로크적 의미에서도 착취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앞의 책: 144). 뿐만 아니라 판 빠레이스의 기본소득권은, 자신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도 착취를 초래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게으르면서 기본소득을 받는 남이 없다면, 그는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일자리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앞의 책: 11). 곧 자신의 착취 개념에 따를 때, 그는 게으르면서 기본소득을 받는 남에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남은 그와 최소한 자원을 놓고 상충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로, 판 돈젤라는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과 일중독자가 있을 때, 왜 게으른 사람에게도 최소한 일자리와 생산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고 활용하지도 않을 일자리와 생산자원을 매각하거나 임대하여 일종의 지대소득에 해당하는 기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권리를 주느냐고 반문한다. 그는 최소한 일자리와 생산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접근 및 노동생산물에 대한 권리는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앞의 곳).

판 돈젤라의 첫 번째 반대 논거에 대해서는 하밍가(Hamminga)가 적실하게 비판하고 있다. 하밍가는 사고실험을 통해 Eu라는 가상의 섬을 상정한다. 여기에는 500만의 인구가 있는데, 일자리는 400만 개밖에 없다. 각각의 거주자들은 4개의 일자리권리증을 받는다. 그런데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5개의 일자리권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먼저 일을 하기 싫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는 대신 일자리권리증을 양도할 것이다. 그런데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일자리권리증의 양도가격이 떨어지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은 기본소득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듯 기본소득의 금액이 줄어들면 다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일자리권리증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기본소득도 증가하게 되어 다시 일을 하지 않고 서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일자리권리증의 가격과 기본소득은 줄어들게 된다. 결국에 균형가격이 형성되면, 일을 하려는데 일자리가 없는 경우도 없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노동자도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일자리에 기반한 불공정한 기생과 착취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Füllsack, 2002: 147-148에서 재인용).

판 돈젤라의 두 번째 반대 논거에 대해서는 와이드퀴스트(Widerquist)가 응답하고 있다. 곧 일자리와 생산자원의 최소성에 대해 일할 의지가 약하거나 게으른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은 일중독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지로 인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로 인한 일자리와 자원의 최소성에 대해서 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며, 일자리가 최소해진 것 자체가 그도 생존을 위해서라도 얼마간은 일할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Widerquist, 2005: 140-142).

이처럼 일자리와 자원의 최소성은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특정한 고소득(지대)을 낳는다. 곧 일자리와 자원의 최소성은 그것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착취나 수탈에 해당하는 특권적인 지대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대를 조세 등으로 환수하여 기본소득의 재원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자원자체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사회전체성원의 것으로 환수하여 거기서 유래하는 지대수입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조달하면 수탈(Expropriation)⁹⁾을 축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사회성원 모두는 자연 및 인류의 유산으로부터 유래하는 부에 대해 평등한 처분권을 가지므로 이 권리를

9) 판 빠레이스나 판 돈젤라는 수탈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빼앗음의 형태를 착취로 포괄한다(판 돈젤라는 찬탈usurpation 개념과 부당이득usury 개념도 부가적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필자는 맑스에 따라 착취(Ausbeutung, Exploitation) 개념과 수탈(Expropriation)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맑스에 따르면 착취는 임노동과정에서의 빼앗김이며, 수탈은 임노동과정 밖에서의 빼앗김이다(곽노완, 2010b: 163-171 참조).

양도하고 기본소득을 받는 것은 남을 착취하거나 수탈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 곧 기본소득은 판 돈젤라의 말대로 정의와 모순되기보다는 오히려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¹⁰⁾

도시권의 내용을 확장할 현물기본소득도 이런 이유로 정의를 해치기보다는 증진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르페브르나 하비의 도시권 개념은 현물 및 현금 기본소득의 권리를 연계됨으로써, 도시거주자가 사실상의 강제노동에 종속되지 않고 자기 삶을 작품으로 만들어가도록 보장하는 실질적인 도시권 개념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21세기 도시권의 주체

그런데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에서 난점 중의 하나는, 그가 노동자계급을 도시권의 주체로 특권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현대세계의 일상성』에서 과거의 자신을 포함한 ‘노동자 중심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다(Lefebvre, 1968b: 92103-1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은 그리 멀리 나아가지 못했다. 그는 같은 해 출간된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노동자계급만이 도시권과 변혁의 주체(행위자)가 될 수 있다”(Lefebvre, 1968: 158)고 주장한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이 “새로운 조건에서이긴 해도 1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전체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거주생활자들의 이해관계들을 모은다”고 주장한다(앞의 곳). 물론 이에 대해서는 노숙자 등 소수자를 노동자계급과 나란히 도시권의 주체로 재발견한 미첼의 도시권 개념이 정정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Mitchell, 2003: 8-11).

그러나 21세기 도시권과 기본소득의 주체 나아가 변혁과 대안의 주체는, 노동자계급을 포함하여 불안정한 생계로 인해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 곧 프레카리아트(Precariat)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¹¹⁾ 왜냐하면 그럴 때 도시권과 변혁의 주체가 최대로 확장되고 나아가 연대의 폭도 최대한 확대되며 이를 통해 도시권과 변혁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극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실업자,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자, 노숙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모두 평등한 권리와 잠재력을 갖고 연대의 주체로 재탄생하고 있는 오늘날, 진보운동은 이 새로운 주체의 탄생을 기리고 도시와 지방의 정치공동체에서 그리고 나아가 전국으로 또 지구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차원의 공간으로 분할되어 있는 진보운동의 연대를 위해서도, 도시권 운동은 글로벌 현물 및 현금 기본소득 운동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 운동은 글로벌 공간들을 가로지르며 이어주는 강력한 지렛대이기 때문이다.

10) 단, 판 빠레이스가 기본소득론은 몇 가지 점에서 정정될 필요가 있다. 우선 그는 하비가 강조한 부동산과 금융 투기를 통한 수탈의 비중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기본소득의 재원을 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그 자신이 천명한 기본소득의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크게 감퇴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노동유인이 크게 감퇴하여 사회적 총생산이 위축되며, 정규직 노동자 대다수가 손해를 보게 되어 정치적인 반대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지대를 낳는 일자리에 대한 그의 논의는 대다수의 정규직이 아니라 명확하게 특권적인 지대를 낳는 일자리(예를 들면, 대기업 간부고소득전문직고위관료와 정치인-예체능스타 등)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

11) 프레카리아트(precariat)는 precarious(불안정한)과 proletariat(프롤레타리아트)의 합성어이다. 기본소득론의 주요 주창자 중의 한 사람인 가이 스탠딩(Standing)은, “불안정한 직업을 가졌거나 또는 그런 직업들을 전전하며, 안정된 고용의 전망도 직업경력의 감각도 전무한 사람들”(Standing, 2010: 149)로 정의되는 프레카리아트를 기본소득운동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 곧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정규직 노동자들 대다수는 프레카리아트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생계노동과 무관하여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이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노인, 청소년, 장애인, 주부, 소수자 등을 포함하는지도 불확실하다. 이와 달리 필자는 초기 맑스에게서 무산자라는 의미를 갖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뜻을 살려, 대다수의 정규직과 생계노동과 무관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생계가 불안정한 모든 사람들’을 프레카리아트로 정의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현수. 2009.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한국공간환경학회 발간. 《공간과 사회》, 통권 제32호.
- 곽노완. 2008. 「글로벌폴리스와 희망의 시공간」. 한국사회이론학회 발간. 《사회이론》, 통권 제33호.
- 2009. 「글로벌아고라의 도시철학」.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발간. 《마르크스주의 연구》, 통권 제14호.
- 2010. 「글로벌아고라와 기본소득」.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발간. 《마르크스주의 연구》, 통권 제17호.
- 2010b. 「착취 및 수탈의 시공간과 기본소득」.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발간. 《시대와 철학》, 제21권 3호.
- 김용창. 2009. 「물리적 도시재개발에서 도시권으로」. 《창작과 비평》, 2009년 여름호.
- 최병두. 2009.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발전, 그리고 종말?」.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발간. 《마르크스주의 연구》, 통권 제14호.
- 최영찬. 2010. 「왜 친환경·직거래·무상급식인가?」.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 제2차 공개토론회. 전교조 제1회의실. 2010년 4월 7일.
- Ackerman, B./Alstott, A./Van Parijs, P. 2006. 너른복지연구모임 옮김. 『분배의 재구성: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 나눔의집. 2010.
- Engels, F. 1872-3. *Zur Wohnungsfrage*. Marx Engels Werke (MEW). Bd. 18. Berlin: Dietz Verlag. 1981.
- Füllsack, M. 2002. *Leben ohne zu arbeiten? - Zur Sozialtheorie des Grundeinkommens*. Berlin: Avinus.
- Gorz, A. 1997. Beck, U. (Herg.) *Arbeit zwischen Misere und Utopie*. Frankfurt a/M: Suhrkamp. 2000.
- Harvey, D. 1973. *Social Justice and the City*. Edward Arnold Publishers.
- 2000. *Spaces of Hop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2003. *The New Imperi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 2008. "The Right to the City." *New Left Review*, 53, September-October 2008.
- Kargl, M. 2006. "Geld allein ist nicht genug - Öffentliche Güter sind für menschliche Sicherheit und soziale Teilhabe unverzichtbar." Netzwerk Grundeinkommen und sozialer Zusammenhalt - Österreich, Netzwerk Grundeinkommen - Deutschland. (Herg.) *Greuneinkommen - in Freiheit tätig sein*. Berlin: Avinus.
- Lefebvre, H. 1968. *Right to the City*. Kofman, E. and Lebas, E. (translated and edited) *Writings on Cities*. Blackwell. 1996.
- 1968b. 박정자 옮김. 『현대세계의 일상성』. 기파랑. 2005.
- 1974. Nicholson-Smith, D. (translated) *The Production of Space*. Blackwell. 1991.
- 1996. Kofman, E. and Lebas, E. (translated and edited) *Writings on Cities*. Blackwell.
- Merrifield, A. 2000. "Henri Lefebvre: a socialist in space." *Thinking Space*. Routledge.
- 2002. 남청수·김성희·최남도 옮김. 『매혹의 도시, 맑스주의를 만나다』. 서울. 2005.
- Mitchell, D. 2003. *The Right to the City: Social Justice and the Fight for Public Space*. Guilford.

- Sandel, M. J. 2009. 이창신 옮김.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 Soja, E. 1989. 이무용 외 옮김.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시각과 언어. 1997.
- Standing, G. 2010. "The Precariat in Korea and Basic Income." 제1회 한·일 기본소득네트워크 공동 심포지움. 『한국·일본의 기본소득 비전과 대안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국제회의장. 2010년 8월 19일.
- Vanderborght, Y./Van Parijs, P. 2005. *Ein Grundeinkommen für alle?* Frankfurt: Campus Verlag. 2005.
- Van der Veen, R./Van Parijs, P. 2006. "A Capitalist Road to Communism." *Basic Income Studies*. vol. 1, Issue 1.
- Van Donselaar, G. 2009. *The Right to Exploit: Parasitism, Scarcity, Basic Income*.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Parijs, P. 1995. *Real Freedom for All*. Oxford University Press.
- 2006. "Grundeinkommen als weltweites Projekt?" Füllsack, M. (Herg.) *Globale soziale Sicherheit*. Berlin: Avinus.
- 2010. "Basic Income, Globalization and Migration."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글로벌 시대의 지속 가능한 유토피아와 기본소득』. 서강대학교 자연과학관 다산관 101호. 2010년 1월 28일.
- Widerquist, K. 2005. "Does She Exploit or Dosen't She?" Widerquist/Lewis/Pressman. (edited) *The Ethics and Economics of the Basic Income Guarantee*.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5.
- Wohlgemant, L. 2006. "Menschenrechte brauchen Grundeinkommen." Netzwerk Grundeinkommen und sozialer Zusammenhalt - Österreich, Netzwerk Grundeinkommen - Deutschland. (Herg.) *Greuneinkommen - in Freiheit tätig sein*. Berlin: Avinus.

제 2 부 : 도시와 정의

시원 : 박 경 (목원대 교수)

발표 :

- 조명래 (단국대 교수) 한국 사회와 공간 정의
- 김지은 (울리노이 주립대) 도시계획과 도시 정의
- 이상현 (한신대 교수) 도시와 에너지, 기후 정의

공간적 보수주의로 회귀의 위험: 세종시 갈등경험을 준거로

조명래 (단국대 교수)

1. 공간의 개혁, 한국사회의 개혁

세종시 논란으로 공간발전의 상황이 다시금 요동치고 있다. 최초의 소수정권이면서 진보정권으로 출범했던 참여정부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한국사회의 권력구조가 갖는 모순을 공간적으로 돌파하는 다양한 개혁처방을 내놓았다. 균형과 분권을 화두로 했던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는, 한국사회의 공간적 개혁에 대한 통치권자의 강한 의지가 들어갔던 것으로, 정권 5년 동안 다양한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행정수도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지역혁신체제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광주아시아문화수도 건설 등은 모두 진보정권이 시도한 공간개혁의 방안들이다. 하나 같이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의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했다.

이 중에서 백미는 행정수도의 후속 판으로 세종시 건설이다. 9부2청2처 등 총 36개의 행정 및 공공기관을 옮겨 행정중심복합기능의 신도시를 조성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게 세종시 건설의 내용이다. 서울중심의 권력구조 재편을 전제로 하는 만큼, 세종시는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많은 논란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이명박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참여정부의 색깔이 강하게 배인 세종시는 새로운 집권세력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세종시 원안은 이렇게 해서 수정을 강제 받게 되었다. 하지만 '세종시 원안'의 수정은 진보정권에 의한 공간개혁의 실험이 수포로 끝나면서 공간발전의 상황이 종전의 불균형 구조로 되돌아감을 의미한다.

한국의 오랜 중앙집권 구조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강한 권력집중을 불러 왔다. 그 집중도가 권력의 집중과 비례한다고 본다면, 수도권으로 인구와 활동의 높은 집중도는 오랜 중앙집권 하에서 지배엘리트들에게 몰려있는 힘의 크기를 반영한다. 수도권 일극으로 권력 집중은 비수도권 전체를 피지배의 공간으로 규정해 왔고, 또한 그 공간의 자율적·내생적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권력의 집중은 그래서 공간의 불균형 발전과 동전의 앞뒤를 이루면서 한국사회의 발전양식을 특징지어 왔다.

이 같은 공간현실에서 볼 때 국토의 균형발전은 단순히 국토정책의 의례적인 구호만 아니다. 만성적인 공간 불평등의 해소를 전제하는 균형발전은 민주적 분권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선택이다. 선진사회로의 진입은 발전의 기회가 모든 지역으로 골고루 나누어지는 건강한 국토구조 위해서만 가능하다. 세종시 건설은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가 21세기 선진사회로 나가기 위해 이룩해야 할 진보적 공간개혁의 상징이 되기에 충분하다.

2. 세종시 갈등: 공간발전방식에 관한 해석의 차이

정권이 바뀌면 세종시 건설은 중단되거나 다른 형태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은 정권 출범이전부터 제기되었다. 이러한 기대와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근 2여 년 동안 원안추진을 십 수차례나 약속했다. 세종시 반대론자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놀라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끝내 거짓으로 밝혀졌다. 권력자로서의 위상이 굳어지는 시점에 이르러 그는 그동안의 대국민 약속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으로 입장을 돌변시켰다. 공중파를 장악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는 원안추진에 대한 약속이 표를 얻기 위한 거짓이었음을 고백하면서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원안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세종시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변화는 적지 않은 정치사회적 파장을 남겼다. 우선 여당 내에서 정책의 신뢰를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이 분출했다. 그러나 그 갈등은 추진방법에서 실용주의와 원칙주의란 차이이면서 동시에 대권을 향한 권력다툼의 연장이다. 친이와 친박 간 세종시 갈등에는 세종시의 실제적 가치에 관한 논쟁이 없다. 반면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의 대립으로 상징되는 원안주의자와 수정주의자 사이의 대립 전선은 세종시 건설을 통해 이끌어내고자 하는 한국사회의 공간적 변화에 대한 전망의 차이를 반영한다.

원안의 수정(백지화)을 주장하는 측(수정주의자)은 세종시 건설로 인해 수도와 정부가 분할되어 국가적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호언한다. 보수적 성향의 수정주의자들은 수도중심의 공간발전 방식을 선호한다. 반면 원안을 지지하는 측(원안주의자)은 세종시 원안의 백지화를 한국사회의 공간적 변혁에 대한 꿈의 좌절로 받아드린다. 진보적 성향의 원안주의자들은 수도권 일극구조가 극복되는 공간발전양식을 꿈꾼다. 세종시를 둘러싼 갈등은, 이렇듯 한국사회의 공간발전 방식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차이의 뿌리는 수도권에 권력적 기반을 둔 세력과 그렇지 않는 세력 간의 '공간 계급'적 대립에 있다.

3. 균형주의자의 꿈과 경고

서울에 권력기반을 두고 있는 세력에게 세종시 건설은 그들의 공간 계급적 이익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세종시 원안이 수도권 기득권층과 이를 대변하는 보수적 정치세력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은 이 때문이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이전을 수도분할로 등치시키고 국가중추기관의 분리가 막대한 '행정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변한다. 이들에게 '행정기관 이전의 백지화'는 세종시 원안 수정의 핵심 전제다. 수정론은 그래서 서울에 구축된 이들의 계급적 이익을 내밀히 반영한다.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헤게모니 세력으로 일상적 삶과 권력적 기반을 수도권에 입지한 사회조직과 인간관계에 두고 있는 점에서, 우리는 이들을 '수도권주의자' 부를 수 있다.

한편, 세종시 원안의 지지자들은 세종시를 통해 수도권 일극으로 편향된 한국사회의 공간적 변혁을 꿈꾼다. 그들이 꿈꾸는 한국사회는 균형발전이 공간적으로 실현되는 사회다. 균형주의자로 부를 수 있는 이들은 이렇게 묻는다. 정치적·정파적 입장을 버리고 현재의 국토불균형 구조를 가지고 대한민국 호가 과연 선진국이란 바다로 향해 나갈 수 있을지를 물어보자. 선진경제 치고 대도시 권역 한 곳으로 발전의 추동력이 온통 몰려 독식의 국토구조를 가진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사실, OECD 국가 중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들은(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전체 인구 중 상위도시의 인구가 10% 미만

이다. 국토가 그만큼 건강하게 골고루 발전되어 있다는 뜻이다. 선진국의 이러한 국토모습은 경쟁력 있는 성장시스템이 공간적으로 작동하는 모습 그 자체다.

한국의 과도한 국토불균형은 단순한 지리적 격차만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의 발전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공간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이다. 수도권 집중이 지금과 같이 계속된다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집적의 불경제와 그에 따른 삶의 질 악화, 경쟁력 약화를 겪을 것이 분명하다. 2006년의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은 76개 주요 광역경제권 중에서 69위다. 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서울의 도시생산성은 도쿄, 뉴욕, 런던의 2분 내지 3분의 1에 불과하다. 수도권 과밀이 주 원인이다. 과밀은 수도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블랙홀처럼 빨려드는 공간발전의 틀 속에선 비수도권은 비수도권대로 인구감소, 투자기회의 위축, 성장잠재력의 소진 등을 겪는다. 2002-2006년 사이 전국적으로 새로이 만들어진 일자리의 98%가 수도권에 창출된 것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비수도권에서 창출된 일자리 기회가 2%에 불과하다는 것은 수도권 블랙홀로 인해 겪는 비수도권의 상대적 박탈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극명히 보여준다.

이 모든 것은 지금의 국토구조로는 한국사회가 선진경제로 나갈 수 없음을 함의한다.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우리는 이미 10년 이상을 서성이고 있다. 사실 이것이 말로 '잃어버린 10년'의 진정한 의미다. '중진국 함정론' 혹은 '한국 정체론'으로 불리는 이 현상은 한국의 공간 발전시스템이 갖는 지속불가능성과 결코 무관치 않다. 균형주의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세종시 원안의 좌절은 한국의 공간발전시스템이 갖는 병적 특질을 더욱 고착시킬 것이고, 그로 인해 한국사회의 선진화는 영구미제로 남는다. 세종시 원안의 백지화로 표상되는 '공간적 진보의 실패'는 왜 나타나는가?

4. 수도권주의의 헤게모니화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반균형·반분권 세력의 권력화가 괄목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간적 보수주의자'라 일컬을 수 있는 이들은 참여정부로 상징되는 진보적 정치세력과의 대립을 통해 스스로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세종시 원안의 폐기 내지 백지화는 그러한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여러 방안의 하나다. 세종시 논쟁에서 드러난 반균형·반분권 세력의 주장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사회의 불균형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뿐더러, 불균형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라는 물음이다. 이들의 관점에서는 '불균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한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은 허구적'이다. 불균형이 있다하더라도 자본주의적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굳이 문제시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허구적인 '균형발전'을 내세워 '세종시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대중인기영합주의(populism)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놀랍게도 60년대 서구 학계에 한 때 풍미했던 '균형성장 대 불균형 성장의 논쟁'을 연상시킨다. 불균형 성장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불균형은 부득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면서, 이를 이용해 공간정책을 펴면 초기의 불균형을 중장기적인 균형으로 반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한국사회에 등장하는 불균형 성장론자들은 균형 자체를 부정하는 대신 불균형을 성장의 동력이라고 주장한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시장 자본주의 하에서 불균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시장경쟁이 오히려 강화되는 모습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세계는 지금 극도의 경쟁을 추구하는 시대에 와 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부문, 힘 있는 부문, 선도 부문이 앞장서서 힘과 파이를 키워야 한다.

자본으로 볼 때는 '삼성'과 같은 대자본, 사회계층으로 볼 때는 창조적 중상계급, 공간적으로 볼 때는 대도시권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것으로 호도되는 세종시는 기실 수도(서울)를 분할시켜 국가 경쟁력만 떨어뜨린다. 세계는 모두 대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만 수도 서울을 분리시켜 그 힘을 빼고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서울을 죽여 세종시를 만드는 것은 천리마를 도륙해 나눠 먹는 것과 같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친정부적 논객들은 자유시장주의를 강하게 신봉하는 자들로서 특히 보수적 경제학자들이 많다. 이들은 현재 이명박 정부의 외곽에서 이념적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고, 그 일부는 이명박 정부의 주류 정책을 생산하는 실세로 편입되어 있다. 정부의 통제를 직접 받는 국책연구기관에도 이들이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다. 국책연구기관 중에서 만행에 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그 대표적인 예다. 2008년에 출간한 보고서에서 KDI는 한국의 지역 불균형이 OECD국가 중에서 중간에 해당할 정도로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진단한 뒤, 국가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해선 허구적인 균형정책을 버리고 대도시권 육성 등 불균형 성장정책을 적극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쿠르그만 교수의 '집적경제에 의한 성장론'을 애용한다. 균형발전보다 효율성(경쟁의 다른 표현)이 더 중요하다는 세종시 수정담론은 국토연구원 등 공간정책을 다루는 국책연구기관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불균형 담론은 이론과 정책의 영역을 넘어 일상의 정치사회적 영역에까지 침투하고 있다. 담론의 생산자들은 이념적으로 시장자유주의자이고, 정치적으로 수구보수주의자이며, 공간적으로 대도시주의자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 면모는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정치 사회적 세력의 구성분포와 일치한다. 또한 참여정부의 역점사업인 세종시 건설을 극렬히 반대하는 세력의 구성분포도 이와 같다. 다른 영역에 있지만, 세종시와 관련하여 이들이 내는 목소리는 같다. '수도이전 반대', '국가정체성 훼손', '행정 비효율성', '수도권 경쟁력 약화' 등이 그러하다. 이들의 목소리가 '초록이 동색'인 것은 시장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지배이념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적으로 표현하면, 이 지배이념은 수도권으로 상징되는 공간계급이익과 일치한다. 이명박정부의 등장과 함께 수도권주의가 전에 없이 헤게모니화되고 있는 것이다.

5. 지방선거: 수도권주의를 극복하는 축제적 변혁이 되어

균형주의 대 수도권주의의 대립은 보수와 진보, 집권과 분권,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가와 시민사회, 지배와 피지배 등을 가로지르는 차이의 전선들이 중첩되어 있다. 하지만, 그 대립은 백중지세가 아니다. 보수정권에 의한 '세종시 원안의 백지화'를 계기로 수도권주의가 몰락하면서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지형지세를 지배하고 있다.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신자유주의와 맞물려 수도권주의는 패권화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균형주의로 표방되는 '공간적 진보'의 가치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참여정부가 시도했던 공간개혁의 실험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가? 그러나 아직 낙망하기엔 이르다.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는 이 시대의 진정한 변혁은 일상공간(예, 도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일상 공간은 '체제화된 권력'이 일방적으로 작동하는 곳이 아니라 일상주체들의 삶의 권리가 주체적으로 추구되고 구현되는 장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일상 주체들은 삶의 모순을 성찰하게 되고, 또한 일상의 축제를 통해 이를 극복하게 된다. 이러한 공간실천을 르페브르는 '축제적 변혁(festive

revolution)'이라 했다. 지방공간의 주체들이 그들의 삶터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수도권주의란 '거대한 공간모순'을 울곧게 성찰하고 극복하려고 한다면, 다가오는 6.2지방선거는 '축제적 변혁'의 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끝>

도시계획과 도시 정의

김지은 (일리노이 주립대)

필자는 르페브르가 남긴 일련의 글에 나타난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라는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정과 제안들을 소개한다. 먼저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에 나타난 도시계획과 도시에 대한 권리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개괄한 후, 오늘날 한국의 도시계획이 지닌 한계와 가능성을 왕십리 뉴타운 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사례를 통해 되짚어 본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계획 방식과 재개발 수법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불안하게 공존하고 있는 지금 도시계획과 개발을 둘러싼 기존의 담론과 전략을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에 입각해 재점검할 것을 제안한다.

1.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에 나타난 도시계획과 도시에 대한 권리

르페브르의 저작에는 근대적 도시계획과 그로 인해 생산된 새로운 공간, 그리고 그 속에서 형성되는 거주민의 일상에 대한 사유가 저변에 흐르고 있다. 1960년 4월 자신의 고향인 나바랭(Navarrenx)이라는 중세적 소도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무랭(Mourenx)에 라크(Lacq)의 천연가스산업 노동자들을 위한 신도시가 건설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르페브르는 "신도시에 대한 단상(Notes on the New Town)"이라는 짧은 글을 남긴바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자연-사람-도시의 관계를 담은 역사의 켜가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 작품(oeuvre; work of art)과 같은 오래된 도시들과 달리, 도시계획이라는 이성적(rational), 추상적(abstract) 개념에 의해 완결적으로 만들어진 신도시에서 인간은 어떤 인간적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생산된 신도시에서 노동자들은 화장실, 욕실과 같은 기능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집을 얻은 한편, 그들의 삶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종합적 계획이라는 개념적 틀로 봉합된 파편화된 공간 속에서 분절되고 고립되어가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르페브르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이성적, 과학적, 계획적 사고에 의한 생산과 자발적, 즉흥적 활력(spontaneous vitality)에 의한 창조가 균형을 이루며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에 대한 가능성의 상상을 제안한다.



<그림 1> 무랭 신도시 전경

1967년 발표된 "도시에 대한 권리 (The right to the city)"에서 르페브르는 '도시적 삶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Urban life has yet to begin)'라는 선언을 통해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 속에서 거주민들(inhabitants)은 여전히 분화되고 소외된 현실에 침잠되어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가능성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이상을 동시에 담아냈다. 르페브르가 정의하는 도시에 대한 권리는 관습화, 제도화된 허위적 권리(pseudo-rights)가 아닌 만남이 일어나고, 교환가치보다 사용가치가 존중되며, 공간 속에 시간의 켜가 쌓여가는 도시에서의 삶, 그리고 그러한 작품으로서의 도시를 창조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도시 거주민들의 주체할 수 없는 '외침과 요구 같은 것(like a cry and a demand)'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능성의 존재와 도시민들의 열망은 이듬해 프랑스와 유럽을 강타한 68혁명을 통해 입증된다. 1974년, 르페브르는 "공간의 생산 (The Production of Space)"에서 산업화와 자본주의라는 두 개의 축에 편중된 맑시즘적 사고에서 간과되어 온 "도시화"라는 공간적 축을 부각시킨 자신의 이론을 집대성하게 된다. 그리고 인식적 공간(공간적 행위; perceived space or spatial practice)-개념적 공간(공간의 재현; conceived space or representations of space)-체험적 공간(재현의 공간; lived space or representational space)이라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간적 삼각관계(spatial triad) 개념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의 관계와 그에 따른 공간의 생산을 이해하는 통합적 이론(unitary theory)으로서의 공간이론을 제시한다.

르페브르는 도시계획가나 기술관료들이 주로 '개념적 공간(공간의 재현)'에 속해 있으며 과학적, 추상적 사고를 통해 체험적 공간과 인식적 공간을 정의하고 이를 실제 공간에 재현 및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그가 무랭 신도시에서 목격한 현상, 즉 계획가와 기술관료들이 그린 개념적 청사진에 따라 순식간에 하나의 도시가 실제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생산된 신도시가 거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과정에 대한 사유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르페브르의 도시계획에 대한 사유는 도시계획을 자본친화적인 정부가 휘두르는 하나의 도구(Logan & Molotch, 1987)로 보는 정통 맑시스트적 시각과 맥을 같이하는 한편, 도시계획이 지닌 가능성에 대한 희망 또한 동시에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 일례로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르페브르는 도시혁명을 위한 두 가지 전략적 가정으로써 '도시개혁을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a political project of urban reform)'와 '성숙된 계획 프로젝트(mature planning projects)'의 가능성을 제시한다¹⁾. 여기서 성숙된 계획 프로젝트란 현실

1) 비슷한 맥락에서 폴 라비노우와의 인터뷰에서 푸코는 건축가의 창조적, 해방적 시도가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실

적인 실현가능성이나 유토피아적이라는 비판에 얽매이지 않은 도시의 모델, 공간적 형태, 시간적 차원에 대한 과학적 사고 이상의 창조적 상상과 실천을 의미한다.

르페브르가 제시한 도시계획의 한계와 가능성은 20세기 초, 중반의 근대도시계획이라는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세기 초 미국과 서유럽에서는 과밀화되고 무질서한 대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 체계²⁾가 만들어지는 한편, 르코르뷔제의 빛나는 도시로 대표되는 이상적인 근대도시모델에 대한 제안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도시계획체계의 확립은 무질서하고 혼잡한 도시의 관리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계획이라는 “합리적” 도구를 통해 지방정부 또는 국가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대도시들이 주택부족, 교외화 확산, 도심쇠퇴라는 새로운 도시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이상적 근대도시 모델에 대한 실험적 시도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르페브르가 목격하고 사유한 무랭 신도시는 바로 당시 서유럽 도시의 공간적 변화를 주도했던 합리적 계획에 의한 신도시 개발의 사례 중 하나였다.

렇다면 오늘날 한국의 도시계획이 지닌 한계와 가능성은 무엇일까? 한국의 도시계획은 도시 거주민들의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풀어가기 전에 한국 도시계획의 역사적 맥락을 먼저 되짚어보기로 한다.

2. 한국 도시계획의 역사적 맥락

한국의 도시계획 개념과 언어는 서구의 그것과 상당부분 닮아있는 한편,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계획 관련 법제화가 시작된 1960년대 한국의 시대적 맥락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1961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과 근대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합법화하기 위해 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등장한 토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률은 1962년 1월에 제정된 “토지수용법”이었다. 토지수용법은 같은 시기에 발표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년 1월 13일)의 시행을 위해 토지를 합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³⁾. 도시계획법(1962.1.20), 건축법(1962.1.20)이 연이어 제정되고 이듬해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10.14.)이 제정됨으로써 정부는 국토 공간의 조사 및 계획에 대한 합법적인 통제 권한과 수단을 갖게 된다. 그리고 경제개발을 주도할 산업단지 개발과 도시의 과밀 해소를 위한 주택지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기존 도시계획법 내에 규정되어 있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분리, 제정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1962년 울산 특정공업지구, 1967년 포항산업단지 등 경제성장을 주도할 산업기지 개발과 서울의 과밀 해소를 위한 강남개발(1966.12-)을 필두로 한 주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1981년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은 국가의 토지개발에 대한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게 된다. 이렇듯, 한국의 도시계획체계는 국가주도의 산업화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 활용되어왔다.

천과 만났을 때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Foucault 1984).

- 2) 프랑스에서는 1919년 법률 제정을 통해 파리를 포함한 세느지역과 인구 1만 명 이상의 지방도시, 인구 증가가 현저한 시가지 등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1943년 도시계획법을 통해 조닝이 도입되었다 (이희정, 이호정 역, 2002). 영국의 경우 1909년 주택, 도시계획법(Housing, Town Planning, Etc. Act) 제정을 계기로 대도시의 공공위생 문제가 주택의 위생과 미관, 도시의 쾌적함이라는 도시 관리의 영역으로 확장, 법제화되었으며, 1947년 도시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을 통해 전국의 모든 지역에 대해 개발과 보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Cullingworth & Nadin 2002). 미국의 경우 1916년 맨해튼의 5번가 상인들이 중심 상업가로를 이민자들이 점유하는 것을 막아줄 것을 뉴욕시에 요청해움에 따라 최초의 토지이용규제(zoning ordinance)가 등장하게 된다. 시카고의 경우 1923년 최초로 종합적인 토지이용규제가 만들어지는데, 이는 백인 거주지에 유색인종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인종차별적 의도를 합리적 계획이라는 언어를 통해 정당화, 합법화시킨 것이었다(Silver 1985).
- 3) 토지수용법 제1조(목적): 본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합리적 이용, 개발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70년대 이후 주택의 대량공급과 도시의 공간적 근대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커짐에 따라, 한국의 계획가들은 1950-60년대 서구 대도시에서 실험적으로 시도되고 있던 르코르뷔제식 공동주택 개발을 세계적인 추세로 보고 한국의 주택 대량생산을 위한 이상적인 모델로 채택하게 된다(서울시 1976, p.3). 70년대 중반 이후 강남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아파트는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의 상징이자 투기의 대상으로 급부상한다. 서구에서 실패로 끝난 근대적 도시의 모델이 한국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현대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도시 거주민들은 아파트가 제공하는 생활의 편리함과 재산가치 증식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아파트 개발의 후원자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건설업계는 개발이익 극대화를 통해, 정부는 주택의 대량공급이라는 성과의 추구를 통해, 건축가와 계획가들은 법적 최대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통해⁴⁾ “아파트 공화국”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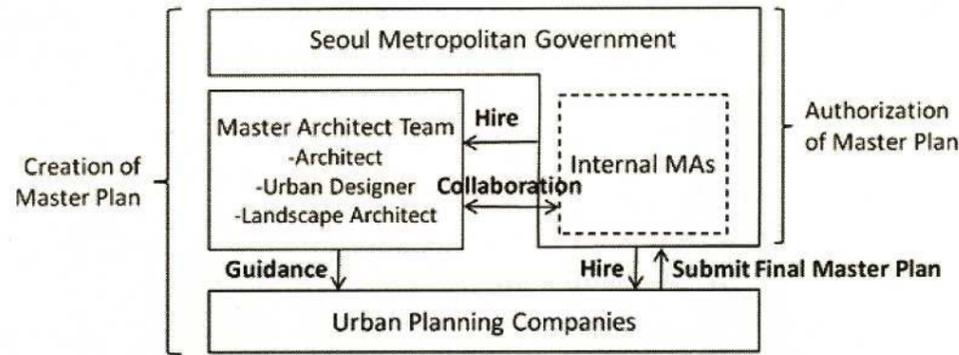
<그림 2> 영동 아파트지구 개발 예시도

80년대 이후 합동재개발로 대표되는 기존주거지의 재개발, 90년대 신도시 개발을 통해 지배적인 계획모델로써 아파트단지의 역할과 영향력이 확고해진 상황에서 새로운 주거유형이나 새로운 도시의 모델에 대한 상상과 실천의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왕십리 뉴타운 기본계획 수립과정은 새로운 계획 방식 및 주거지 재개발 모델을 실험하고자 했던 계획가들과 철거 후 고밀도 아파트 개발이라는 보편화된 재개발 방식을 선호하는 주민들 간의 첨예한 갈등을 여실히 드러냄으로써 한국의 도시계획이 안고 있는 한계와 가능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3. 왕십리 뉴타운 기본계획: 미완의 계획적 실험⁵⁾

- 4) 개발사업에서 “계획가”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는 적법한 절차를 통과하기 위한 서류작성과 협의다.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들을 “용역사”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러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계획가의 부재는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발행한 도시계획제도의 개념, 내용, 절차에 대한 길라잡이 시리즈에서도 두드러진다. 지구단위계획제도 길라잡이는 계획에 참여하는 주체를 주민(거주지역 주민, 민간사업가), 공무원(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심의위원(도시계획위원, 건축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으로 소개하고 있다. 도시계획가의 역할은 심의위원으로써의 자문역할 또는 세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승인서류를 만드는 “용역사” 역할로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 5) 서울시에서 발간한 <뉴타운 만들기 과정의 기록: 왕십리 뉴타운>, <왕십리뉴타운 개발기본계획>과 필자가 2009년 5월에서 8월 사이 왕십리 뉴타운 계획에 참여한 계획가, 공무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함.

시범 뉴타운 중 하나인 왕십리의 뉴타운 기본계획 수립은 MA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계획자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한 최초의 사례에 속한다. 서울시는 당시 청계천 복원의 일방적 진행과 구체적 계획의 부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건축가 정기용과 건축과 교수 이상헌을 왕십리 뉴타운의 MA로 위촉했다⁶⁾. 두 건축가는 이를 왕십리 고유의 역사와 삶을 존중하는 도시재생의 모델 제시와 주민참여를 통한 계획수립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MA직을 수락했다. 기본계획 수립팀은 3명의 MA(총괄, 건축, 조경), 2명의 내부 MA(서울시 공무원),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회사로 구성되었다(그림3 참조). 성동구 공무원도 MA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동향을 파악하고 주민들과의 만남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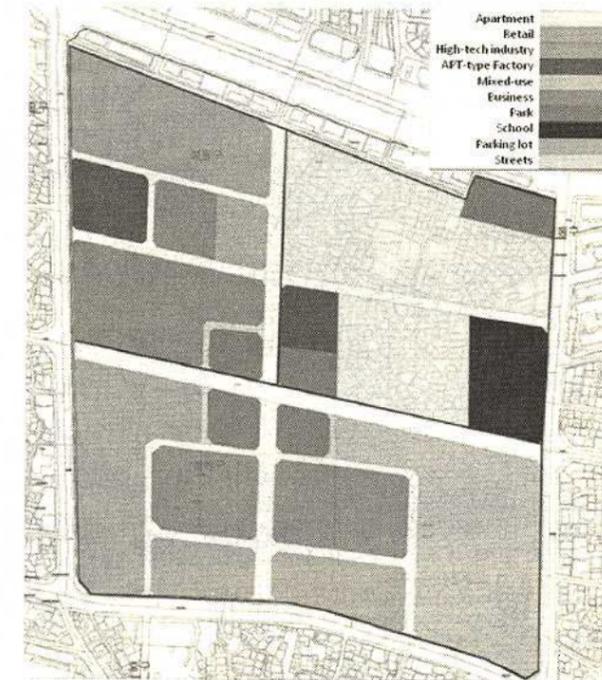
<그림 3> 왕십리뉴타운 기본계획 수립 참여주체들의 역할 및 상호관계

2002년 10월 시범뉴타운 선정 발표 당시의 왕십리 뉴타운 예시도는 뉴타운이 전면철거 재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나 MA들은 현장답사, 자료조사, 내부회의를 통해 ‘주민참여를 통한 새로운 도심 커뮤니티 조성’, ‘기존도시조직을 존중하는 수복형 뉴타운 개발’, ‘새로운 기능 도입을 통한 도심형 복합 뉴타운 조성’이라는 새로운 기본방향을 이끌어 낸다. MA들은 왕십리가 주거지역 중세분화 계획에 따라 2종일반주거지(단독 7층, 아파트 12층, 용적률 200% 이하)로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고층, 고밀도 아파트 개발이 아닌 주변 맥락을 고려한 중층고밀의 새로운 주거유형의 가능성을 실험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전면철거 및 고밀개발에 대한 고정관념과 MA팀이 추구하는 수복형 개발 및 중밀도 개발 사이의 갈등은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6)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에피소드는 서울시에서 발간한 “뉴타운 만들기 과정의 기록: 왕십리 뉴타운”에 수록되어 있음.



<그림 4> 2002년 시범뉴타운 발표 당시 서울시가 제시했던 왕십리 뉴타운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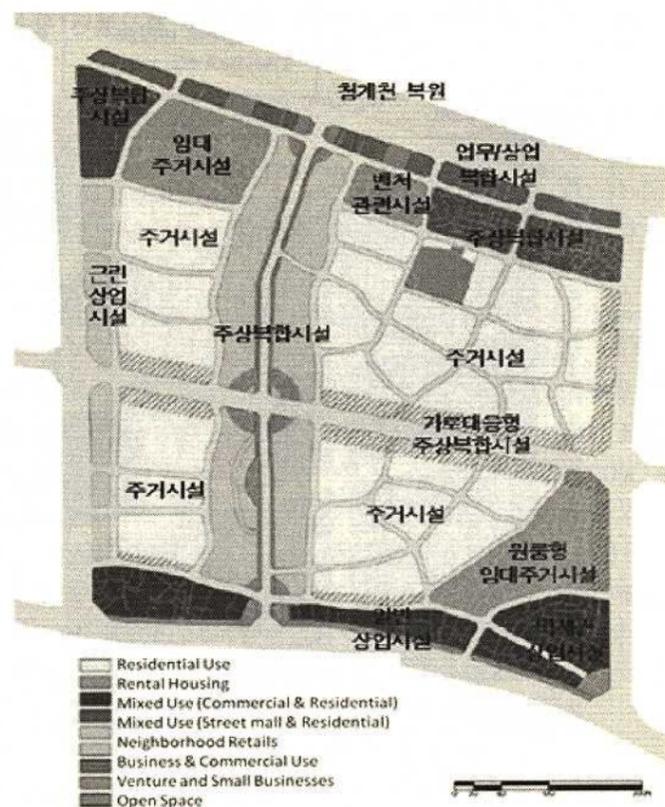


<그림 5> 2002년 시범뉴타운 발표 당시 서울시가 제시한 토지이용계획 예시도

MA팀의 주민참여형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따라 기본계획 착수 약 1개월 후인 2003년 2월부터 주민과의 만남의 자리가 만들어졌다. 왕십리에서는 주민을 계획 초기에 참여시킴으로써 계획의 방향을 함께 찾아가기 위함이었다. 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일반적인 계획관행에 비추어볼 때 이는 획기적인 시도였다. 계획초기에 마련된 두 차례의 주민간담회(2.25, 2.28), 주민과의 대화(3.18), 재개발 추진위원회와의 면담(3.24)을 통해 MA팀은 “주민”의 관심사가 새로운 계획방식이나 주거유형이 아닌 뉴타운 개발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과 손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뉴타운 발표 당시 서울시에서 제시했던 왕십리 뉴타운의 공영개발계획에 대한 반발, 공영개발이 될 경우 충분

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일방적인 질문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MA들은 계획의 내용에 대한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과의 만남을 다시 시도하기로 결정한다. 특정한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일부 주민집단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진정한” 주민들과 접촉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참여 확대, 직접 방문, 주민대표 선정 등과 같은 다양한 참여의 방식이 검토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왕십리 뉴타운 일부에 대한 공영개발의 가능성, 주민주도의 기존 재개발방식이 아닌 입체환지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의 가능성 등 실질적, 제도적 여건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면서 MA팀은 용적률 180% 내외의 중층고밀의 중정형 주거유형과 순환재개발을 전제로 한 토지이용계획안을 마련했다(그림 6 참조). 이후 5월에 열린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의 핵심적 관심사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민들은 중층고밀의 중정형 주택개발이 고층아파트 재개발과 같은 재산가치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보다 높은 용적률의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지, 새로운 개발방식을 시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닌지 등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기했다.



<그림 6> 2003년 MA팀이 제시한 토지이용계획안

한편, 왕십리에서 재개발 추진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재개발추진위원회는 공식적인 주민간담회나 설명회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 외에도, 건화종합건축사무소에 직접 의뢰하여 작성한 “왕십리 뉴타운 개발계획(안)”(그림 7 참조)을 통해 민간주도의 고밀도 고층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주민단체와 MA팀의 계획유형 및 개발방식에 대한 갈등을 지켜보던 서울시는 결국 공영개발방식 포기, 저층-중층-고층이 조화를 이루는 계획, 용적률 상향조정 등의 결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서울시의 결정에는 나대지가 거의 없는 기존도시의 재개발에 도시개발방식

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건교부의 유권해석, 실질적으로 공영개발을 시행할만한 재원 마련이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왕십리가 뉴타운 시범사업이자 청계천 복원의 도시재생 효과와 연계되는 중요한 입지였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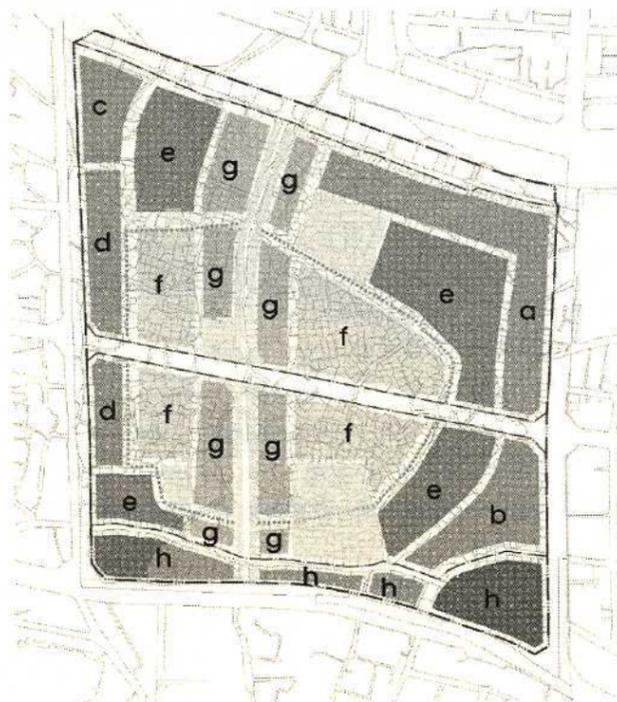


<그림 7> 2003년 왕십리재개발통합추진위에서 제안해 온 토지이용계획안

결과적으로 MA들이 이상적으로 추구했던 주민참여를 통한 계획, 새로운 주거유형의 실험, 수복형 재개발의 시도는 일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제도적, 구조적 한계로 인해 미완의 시도로 끝났다. 최종 승인된 계획에는 왕십리가 지닌 고유한 도시조직의 특성 보존과 중층고밀의 새로운 주거유형 시도에 대한 MA들의 의지와 왕십리 재개발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의 고밀도 고층아파트 개발에 대한 열망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가장 첨예한 갈등을 초래했던 용적률 문제의 경우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주민참여의 한 방법이다”라는 논리 하에 서울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기준용적률 200-220%, 허용용적률 220-240%, 상한용적률 250-26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기준은 2종일반주거지의 용적률인 200%를 초과하는 것이다. 한편,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길의 선형, 블록의 형태, 주거유형에 대한 MA들의 계획개념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그림8 참조). 특히 내부 주거지 블록 일부를 8층 이하의 중정형 주택 개발지로 지정함으로써 새로운 주거유형을 공식화했다(그림9 참조). 마지막으로, 사업방식이 민간주도의 재개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복형 순환재개발 방식은 논의로만 그치게 된다.



<그림 8> 2004년 최종 승인된 토지이용구상도



<그림 9> 도시관리계획: 조닝별 계획도 (f: 중정형 배치, 8층 이하)

4. 왕십리 사례를 통해 본 도시계획과 도시에 대한 권리

MA들이 시도한 중층고밀의 중정형 개발, 수복재개발, 순환재개발, 주민참여를 통한 계획수립 등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연구는 이전부터 있어왔다. 중층고밀의 중정형 개발이 바람직한 대안적 주거유형인지, 왕십리에서 시도했던 주민참여 기법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앞으로 더 많은 시도와 경험을 통해 채워가야 할 부분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애초부터 실현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출발한 이러한 계획 개념들이 왕십리 뉴타운 기본계획을 통해 일반적, 지배적 개념으로 고착된 고층아파트 중심의 철거재개발 방식과 폐쇄적인 계획 관행과 직접 부딪치는 과정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실험되고 실현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시도가 바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향해 나아가는 도시 혁명을 위한 전략적 가정으로써 르페브르가 정의한 '성숙한 계획 프로젝트'의 한국적 실천 사례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MA들이 주민참여형 계획을 통해 대화하고, 교육하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나가길 원했던 "이상적인" 주민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에는 그런 주민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편이 더 정확한 해석일지도 모른다. 왕십리의 "주민"이라고 자부하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주민의 대다수는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경험하면서 발 빠르게 차익을 실현하거나 조합에 맡겨두면 알아서 진행될 재개발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지역발전협의회 회원들이 지역주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수익성이 보장되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렇듯,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변화에 대한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획가의 실험적인 제안은 왕십리 뉴타운의 물리적 공간계획에 약간의 자취만을 남긴 채 미완의 시도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애초부터 지역인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세입자는 참여의 대상에서 배제되었으며, 세입자들 역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신들이 재개발에 사업에 관여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왕십리에서 수십 년간 사업을 꾸려온 상공인들도 이전부지를 마련해주는 한 재개발에 반대할 자격도, 생각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된 보상을 받고 왕십리를 떠나는 것 뿐이었다. 이러한 판단은 한국 도시개발 역사를 통해 경험적으로 체득된 것이다. 지역의 오랜 거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왕십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담론도 존재하지 않았다. 담론(언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사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전략도 생산될 수 없다. 르페브르의 언어를 빌자면 '도시개혁을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교환가치' 중심에서 '사용가치' 중심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외침이자 선언인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법적으로 개발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계층의 정치적 담론과 전략 개발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한국의 도시계획 및 개발과 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은 도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얼마나 보장해줄 수 있을까? 도시 개발을 통한 교환가치 창출과 배분을 통해 표면적 삶의 질이 향상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역사를 겪으면서 우리는 도시 공간의 '이용가치'를 철저히 '교환가치'에 종속시키는 삶에 익숙해져왔다. 뉴타운 개발은 이에 대한 극단적인 사례이다. 일부 계획가의 창조적 발상이나 계획적 시도로 변화되기에는 역사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왕십리 뉴타운 계획과정은 여실히 보여주었다. 동시에 가장 불확실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시도들의 실현 가능성을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기존의 계획 방식과 재개발 수법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불안하게 공존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도시개발을 둘러싼 담론과 전략들을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궁극적인 가치에 대비해 점검해야 할 시점일 것이다.

<참고문헌>

이희정, 이호정 (역). (2002). 주요외국의 도시계획제도와 변화.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1976). 영동 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
 서울시. (2004). 뉴타운 만들기 과정의 기록: 왕십리 뉴타운
 서울시. (2004). 왕십리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Angotti, T. (2008). *New York for Sale: Community Planning Confronts Global Real Estate*. Cambridge: The MIT Press.

Cullingworth, B. and Nadin, V. (2002). *Town & Country Planning in the UK* (13th edition). New York: Routledge.

Foucault, M. (1984). *The Foucault Reader*. P. Rabinow (Ed). New York: Pantheon Books.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OX, UK ; Cambridge, Mass., USA: Blackwell.

_____. (1995). Notes on New Town. In *Introduction to Modernity: Twelve Preludes, September 1959-May 1961* (pp. 116-126). London; New York: Verso.

_____. (2007). The Right to the City. In E. Kofman and E. Lebas (eds.) *Writings on Cities* (pp.147-159).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Logan, J. R. and Molotch, H. L. (1987). *Urban Fortunes: The Political Economy of Plac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ilver, C. (1985). Neighborhood Planning in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51(2), 161-174.

도시와 에너지, 기후 정의

이상헌 (한신대 교수)

1. 기후변화와 기후정의

기후변화는 전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의 범위나,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데 드는 비용부담은 결코 균등하지 않다. 기후변화는 기존 사회구조의 분단선(계급, 인종, 양성, 국적 등)과 겹치거나 혹은 이탈하면서 복잡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기후변화는 기존의 사회불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다시말해 그동안 기후변화를 야기하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한 국가들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 지역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더 취약하며, 한 국가 내부에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나 집단이 기후변화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다.

2009년에 Germanwatch는 UNFCCC 당사국들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08년 기간 동안의 2010 기후위험지수(Climate Risk Index)를 발표했다. 이 지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손실을 계량적으로 평가한 국가별 기후변화 취약성을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가장 위험한 국가들은 방글라데시, 미얀마, 온두라스, 베트남, 니카라과, 아이티, 인도, 도미니카 공화국, 필리핀, 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극히 낮은 국가들이어서, 기후변화 기여도는 낮지만 기후변화 취약성이 매우 높은, 사실상 기후 불평등의 대표적인 현상인 것이다(이정필, 2010: 2).

이러한 기후변화 기여 및 책임의 불평등성을 이유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의 현재 영향과 미래 적응 및 완화의 역사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역사적 책임과 불평등성에 나타난 부정의의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려는 운동을 ‘기후정의운동’ 이라고 하는데(장호중, 2010), 이것은 기후변화에 의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운동과 사회정의운동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후정의란 “기후변화에 의해 초래된 불공평한 부담을 해소하거나 완화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의미한다.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의 한 형태로서 기후정의는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 프로젝트의 형성에서 모든 사람을 공정하고 차별없이 대하는 것과 동시에 기후변화와 차별을 영구화시키는 시스템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7). 기후정의 운동은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는데, 약 10만명의 시위대가 코펜하겐 거리를 누비며 “기후가 아니라 정치를 바꾸자”, “기후가 아니라 체제를 바꾸자” 라는 구호를 외

7) 이러한 정의는 기후정의운동을 전개하는 “mobilization for climate change”의 홈페이지(www.actforclimatejustice.org)에서 인용하였다.

치면서 '기후정의' 를 요구하였다. 기후정의운동은 각국 정부에 의존해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실망스럽게 되면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2. 도시, 에너지, 그리고 기후변화

전세계적으로 도시화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이 도시화는 마크 데이비스(Mark Davis)가 지적하듯 슬럼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슬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도시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야할 시점이 되었다.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는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동시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 그러면 그 열쇠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는 무엇인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지구온난화이며,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것은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에 있다. 즉, 에너지문제가 도시와 기후변화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의 에너지 사용시스템을 어떻게 전환(transformation)시키느냐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도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교체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과 소비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시스템, 그리고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변화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핵심적 화석연료인 석유의 최대생산정점(peak oil)이, 보수적으로 평가하면 2020년에서 2030년 사이, 비판적으로 평가하면 2010년에서 2015년 사이라고 할 때, 이러한 에너지 전환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시급한 사안이다.

저소득층과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주된 활동 영역으로 하고 있는 자선협력기관 '리빙 시티즈' (Living Cities)는 미국내 4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 무엇을 수행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연구하였다(리빙 시티즈, 2009). 그 결과 도시들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 노력을 기울였거나, 앞으로 기울이고자 하였는데, 첫째, 그린 빌딩, 둘째, 녹색 일자리, 셋째, 녹색 교통이었다.

우선, 그린 빌딩은 신규 빌딩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짓도록 법률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것 못지 않게 기존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개선(green retrofitting)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방법은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특히 불경기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둘째, 녹색 일자리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지향하는 여러 가지 직업들(재생가능에너지 생산, 대체 연료 생산, 대중교통 향상, 빌딩과 주택 단열, 바이오 연료 주입, 자전거 판매 등)을 의미한다. 미국 진보정책연구소(Center for American Progress) 보고서에 의하면 건물 개선 사업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면 800,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한다. 녹색 일자리는 아직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몇 개의 프로그램만이 가동되는 단계에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는 '그린 포 올' (Green for All)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빈곤한 커뮤니티를 위한 직업 창출에서 일반 대중, 정부 및 기업 부문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셋째, 녹색 교통은 복합적 토지개발(mixed land development)와 생태적인 압축 도시(eco-compact city)를 지향하여 자가용 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대중교통 지향적인 개발(TOD)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TOD로 인해 대중교통중심지가 고급주택화(gentrification)됨으로써 저소득층을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몰아낼 수도 있다. 즉,

기존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하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3. 기후정의와 도시정책

이미 지적했듯이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에 적응하는 측면에서나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측면에서나 기후변화는 기존의 사회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앞서 살펴본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수립되고 평가될 필요가 있다.

미국 대도시 사례를 근거로 무리하게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OECD에서 발간한 「도시경쟁력과 기후변화」(Competitive Cities and Climate Change)에서도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분야는 대체로 유사하게 제시되었다. 또한, 두 경우 모두 구체적인 추진 수단으로서 재정의 문제를 부각시킨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정책은 건물, 직업, 교통 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루되, 도시 재정을 어떻게 녹색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들을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가?

첫째, 그린빌딩과 관련해서는 첨단 기술을 적용한다든지, 신규 주택에 값비싼 재생가능에너지를 설치하는 식의 자본집약적 방식의 접근 보다는, 노동집약적 방식으로 기존 주택들의 에너지효율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더 역점을 두는 것이 기후정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특히 한국처럼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 집약적인 방식으로 추진되면 기술 종속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경제적 수익의 재분배도 적절하게 일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빈곤층의 불량 주택을 에너지 효율이 높게 개선해주는 사업(weatherization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주로 중소기업 위주로 수행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기후정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⁸⁾.

둘째, 녹색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에 위치한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교육기관에서는 녹색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통적인 경제개발 모델에서 빠르게 탈피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경제개발 모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은 낮은 세율, 공공 설비 비용 감소, 기반시설 개발 등의 약속을 제공하면서 대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녹색일자리는 대체로 주택개선사업이나 태양 전지판 설치 등에서 보듯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확대

8) 예를 들어 특별조세지구(special taxation districts)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 미국 버클리시(City of Berkeley)는 클린 에너지 지구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에 필요한 에너지 개선에 소요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채권을 판매한다. 버클리 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주택소유주의 자산에 대해 특별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20년 이상에 걸쳐 채권비용을 갚아나가게 된다. 이외에도 요금납부식 용자(On-bill Financing)도 있는데, 주로 중소기업 에너지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에너지 절감 비용을 대출해주고 상환기간을 최대한 연장하여 공공요금 납부시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작은 규모의 기업들 위주로 녹색일 자리를 확대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기후정의 관점에서 더 바람직하다.

셋째,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확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바람직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대로 실제로 형평성의 문제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에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에 재정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TOD로 인해 고급주택화가 일어나는 바람에 저소득층의 주거가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규제 장치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프라가 중요한 녹색교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재원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혼잡부담금(런던, 스톡홀름 밀란), 개발부담금과 개발이익세(마이애미, 보고타), 도시내에서 적용되는 배출권 거래제도(시카고 기후변화 교환제)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지방세를 녹색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데, 지방세수를 대부분 토지판매, 즉 부동산개발에 의존하는 것은 도시확산을 일으키거나 불필요한 교통수요를 더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세수원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맺는말

코펜하겐의 15차 당사국 총회에서 확인되었듯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이 결국 거대 자본 위주의 시장 메카니즘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국가들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기후정의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도시는 특히 에너지와 관련하여 건물, 직업, 교통 분야에서 기후정의의 관점에 입각하여 정책을 전개해 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재정 녹색화를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논의의 흐름이 분명하게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건위주의 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퍼부으면서 녹색성장을 지향한다고 선전하는 한국의 현 정부는 기후부정의를 계속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진보진영은 기후정의를 위한 재정 녹색화의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구호를 외친다고 기후정의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천적이고 세밀한 대안의 마련이 기후정의를 구현하는 정도(正道)에 가깝다고 본다.

<참고문헌>

- 라미아 카말차우이·알렉시스 로버트 엮음, 국토연구원 옮김, 2010, 『도시경쟁력과 기후변화』, 국토연구원
리빙 시티즈 엮음, 이왕건·주희선·구홍미·이유리 옮김, 2009, 『그린 시티』, 국토연구원
이정필, 2010, “기후정의 관점에서 본 기후펀드의 현황과 개선방안”, 『Enerzine Focus』 20호 (2010.11.5)
장호중, 2010, “코펜하겐 이후 기후정의 운동의 전망과 과제”, 『마르크스 21』 제5호, pp.116-134

제 3 부 : 마을만들기와 인권 (특별 섹션)

사회 : 이영범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발표 :

- 김경민 (대구YMCA사무총장) 기출청소년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마을만들기

- 김은희 (도시연대사무국장) 영구임대아파트,

자존감을 잃어버린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지정토론 :

고은태 (중부대 교수), 임은아 (인산별자리도서관 관장)

홍승모 (도시연대 커뮤니티디자인센터장) (기나다 순)

가출청소년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마을만들기¹⁾

김경민 (대구YMCA사무총장)

1. 가출청소년과 삼덕동 마을만들기와의 인연

-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출청소년쉼터가 삼덕동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을만들기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출청소년 쉼터를 운영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출청소년쉼터가 마을만들기 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이지요. 삼덕동에 마을만들기라는게 사업목적 가지고 접근했다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다 함께 가는 부분이 존재했지만 마치 어떠한 목적 가지고 대상자를 정하고 장소를 만들고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러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출청소년쉼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지 않았죠. 연판장도 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한 걸 희석해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마을만들기 운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마을 잔치도 했고 담장 허물기 꾸미기도 진행하고 등등 그런식으로 마을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하고 그러다 보니 가출청소년에 대한 엄청난 선입견들이 희석되고 사람을 이해하고 하는 부분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사회복지에서 현장에서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담배피우는, 학교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마을에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많은 시설들이 도심지 외곽으로 몰리고 - 도심지 외곽에서는 반대운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뼈뺀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쫓겨나지 않았다는 게 마을 만들기 운동의 성공의 척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2. 마을만들기 운동과 마을의 이질적인 존재 (원래 마을의 구성원이 아니라 마을의 구성원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와의 연관성

- 마을은 그 자체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삶이 있는 곳이죠. 마을은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퇴보하고 또 다른 모습을 바뀌어갑니다. 하나의 생명체이죠. 생명은 외부의 자원을 받아들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외부의 자원이 긍정적으로 들어오면 생명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만들기 운동에는 이러한 외부적 자원이 지속적인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유입할 것인가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겠지만 오로지 내생적 발전은 그 한계가 뚜렷하다고 봅니다. 생명체의 수컷과 암컷의 결합은 또다른 DNA를 만들어냅니다. 마을 안에서의 다양한 성공적인 결합이야말로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에는 거기에 거주하든, 거주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만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거주에 대한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외부

1) 본 내용은 삼덕동마을만들기운동을 함께 진행한 대구YMCA 실무자가 작성한 원고임

자원 전체가 거주할 필요는 없을것이라고 봅니다.

3. 삼덕동 마을만들기운동과 가출청소년과의 관계 지속성

- 삼덕동 마을 만들기 운동에 있어 가출청소년들은 자원봉사로 계속적으로 결합했습니다. 마을 잔치를 하면 음식을 청소년 센터 선생님들과 같이 준비했고 설거지도 함께 했습니다. 마을 청소도 함께 했고요 또 마을의 일부 주민들은 먹을거리든지 옷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청소년센터로 가져다주었고요. 자원봉사에는 의도적인 부분이 있었죠. 가출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부분보다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을 안에서 하나의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마을에는 꼭 어딘가 부족해보이는 장애인도 있었고, 망나니도 한명은 꼭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도 마을에서 뭔가의 역할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망나니 같은 이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갔던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자연치유능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출청소년들과 마을만들기의 결합은 그러한 부분으로 자연치유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온전한 치유라든지 삶이 180도로 바뀌는 변화라든지 이런것들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열거한 점에서 의미있는 관계 맺음이었다는 거죠

4. 왜 삼덕동 마을만들기운동이 가진 가출청소년아이들과의 함께 한 가치가 사회화되지 못하고 있을까.

- 그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가출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마을과의 결합의 중요한 내용을 세상은, 지방자치단체는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결국 단기청소년센터는 행정에서 40억원을 들인 마을이 아닌 시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단체를 합해서 만들어놓긴 했지만 아주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청소년센터를 그 안에 결합시켰죠. 중장기 청소년센터는 마을에 있기는 하지만요.

행정의 시각은 원가 크고 멋지고 독립되어 있고, 그러면서 마을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래서 아예 문제를 차단시키고, 청소년센터든지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라는 부분에서 유기적 관계는 오히려 관에서 차단당하는 부분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회화 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출청소년센터라는 시설을 계속적으로 사회화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겠지요. 우리 안에서 검열을 당했던 부분 또한 존재합니다. 청소년센터를 운영하는 실무자도 그랬고, 세 번째는 가출청소년센터는 하나의 기관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와도 맞물려가는데 기관은 기관안으로 매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기관이라는 문제에만 접근하고 그러한 부분으로 자신의 내용을 정립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행정에게 요구받기도 하고요.

5. 좋은 사례가 갖는 의미는 어떻게 사회화가 가능할까

- 좋은 사례와 사회화는 함께 갈수 없는 건가요? 좋은 사례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사회화를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일까요? 예산에는, 자원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이 적을수록 예산이 적을수록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지요 대구 YMCA가 전국의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자원이 대구지역에 내려오지도 않을뿐더러 그렇게 한다면 지역에서의 반발이 더욱더 생기지 않았을까요?

삼덕동 마을 만들기 사업에 그렇게 많은 자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건물 하나 짓는데도 40억원입니다. 썸지공원 하나 만드는 예산이 2억원입니다. 민간이 하나 하자면 예산 집행에 수많은 장애요인

이 있습니다. 그 많은 지역축제 예산은 어느정도의 규모일까요? 기본 10억원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봐주면 되지 않을까요?

마을 만들기 운동은 어느 단체가 독점하지 못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사회화 또는 운동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운동은 독점이 아닌 분산과 독립을 요구하지 않는가요? 여러 지역에서 전혀 색깔이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게 마을 만들기 운동이 아닌가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 만들기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단기적인 시각에 머물지 않았던가요? 10년정도 그 안에 함께 하겠다는 좋은 의미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수많은 개인적인 투자가 있었던가요?. 오히려 급속적인 성장주의가 우리안에 여전히 존재해서 단기적으로 승부수를 만들어보려는 욕구가 여전히 있지 않을까 합니다

6. 마을만들기운동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의 결합

마을만들기운동과 똑같은 비중을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있지 않을까합니다. 사회적약자의 인권에 집중하는 단체가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할수 있을것이고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는 단체가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있다면 그안에 내용을 담을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2개의 전혀 다른 단체가 그 주제를 가지고 만날수도 있을것이고요.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좀더 넓은 품새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을 하는 주체를 어디에 무엇을 하는 주체로 규정짓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민총장의 덧붙임)

우리직원한테 적으라고 해봤습니다. 내가 봐도 재미있네요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시선도 있고요, 가출청소년 센터의 고민이 일하는 청소년 사회적 기업 피스트레이드로 발전해 간 과정은 없네요, 건전하고 자율적인 일자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현장에서 얘기해요, 안녕!

영구임대아파트, 자존감을 잃어버린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¹⁾

김은희 (도시연대사무국장)

마을만들기는 이제 민간영역만이 아니라 정부부처 및 전문가까지 관심을 갖고 협력하고 지원하려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속에서 묵묵히 주민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민간단체들의 나름대로 성과였다고 판단되는데, 2006년부터 건교부, 행자부, 농림부 등 중앙부처까지 '살고싶은 도시(마을)만들기' 및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의 사업을 설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든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의 참여속에서 생활 공간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추구한다.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개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과정마다 지속적인 상호학습과 의사 소통과정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장소, 사람과 사회와의 풍부한 관계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그 속에서 주민자치와 민주주의가 발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규모 지점별 정비사업이나 낭만적 공동체운동에 매몰됨으로써 마을만들기 운동의 이념적 지향과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을만들기운동은 환경을 개선하거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근원적 질문이어야 한다. 우리사회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대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1. 임대와 분양, 풀리지 않는 갈등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간의 갈등은 최근에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과거 주택 100만호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달동네에서는 없지만 더불어 살았던, 거칠지만 이웃을 돌볼 줄 알았던, 열심히 하면 달동네를 떠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던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동네를 떠나 뿔뿔히 흩어졌고, 그리고 일부가 영구임대아파트에 둥지를 틀었다. 이들에게 아파트는 안락한 주거공간을 제공해줬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아파트라는 공간이 갖는 익명성과 '임대'라는 낯선 단어에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방황했다. 부부싸움을 말려줬던 이웃도 없어지고, 점심을 걸렀던 아이들을 끌고 밥상 한 귀퉁이에 손가락을 쥐어줬던 옆집 아줌마도 없어졌다. 술 마시고 늘어지게 잠을 자는 이웃을 두들겨 패서 일용직으로 끌고 나갔던 거센 손길도 없어졌다.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달동네가 갖고 있던 이웃의 소리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대로 방치되기에 이른다. 임대아파트를 상징하던 00단지라는 단어를 울리기 부끄러워했던 그들은 동네에서도, 학교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가 가둔 벽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견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약칭:도시연대)가 영구임대아파트를 바라보게 된 계기는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간의 심각한 갈등이 사회문제로 되면서였다.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분양아파트 주민

1)본 원고는 시민과도시(LH공사)에 게재한 원고를 재수정한 것임

들의 담장 또는 철조망 설치로 인해 임대아파트 아이들은 5분이면 도달할 학교를 20분이나 걸려 빙 돌아오고 있었으며 학교에서 벌어지는 왕따 등은 심각한 상태였다. 한편으로는 저소득계층 주민들의 삶터에서도 마을만들기 운동이 본격화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2. 임대·분양 아파트 주민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장소 만들기

2006년, 도시연대는 노원구 중계동, 인천시 송현동, 천안시 쌍용동의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임대·분양아파트 주민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장소만들기'를 시작하게 된다. 임대와 분양아파트가 같은 단지에 있으면서 갈등이 표면화되었던 천안시 쌍용동은 '수다로 풀어나가는 우리동네 이야기'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7차례 진행하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했다. 수다를 통해 서서히 벽을 허물어갔던 임대·분양 아파트 부녀회원들은 개장식을 계기로 통합부녀회를 결성하였는데 작은 간담회를 통해 끊임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스스로들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나갔던 자리가 이들을 한 동네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든 것이다.

중계9단지에는 임대와 분양 아파트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된 곳이다. 물리적 분리가 명확한 곳 이어서 갈등이 표면화되지는 않았으나 초등학교에서의 임대와 분양 아이들간의 편견은 심각한 상태였다. 노원나눔의 집이 중심이 되어 2000년부터 공부방과 마을회관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도시연대는 마을회관과 함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한 우리동네 지도그리기, 국수잔치를 겸한 주민설명회, 청소년들의 우리동네 사진 전시회, 커뮤니티 장소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등 숨가쁘게 1년을 달려왔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지 12개월만에 쓰레기로 뒤덮였던 놀이터 한곳을 깨끗하게 새단장했다. 이듬해 도시연대는 일탈장소가 빈번하여 주민 모두가 기피했던 놀이터 뒷편을 산책로로 바꾸고 문화공연을 하고 싶어 했던 청소년들을 위해 놀이터에 작은 무대도 설치했다. 크리스마스때에는 청소년들이 기획하는 '문화행사'도 개최했다. 가족의식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자신들이 기획한 공연을 보여드리고 함께 식사도 했다. 이를 계기로 9단지 주민들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9단지 만들기'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을회관의 내부문제와 엄석대²⁾보다 100배는 나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대는 주민의 횡포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3년만에 일단락짓게 되었다.

3. 신내10단지 한평공원 만들기

중계9단지 임대아파트에서의 활동은 도시연대 한평공원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경제적 소외와 위축, 편견과 자존감 상실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던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참여를 통한 변화'는 그동안 일반주거지나 상가를 중심으로 진행해왔던 한평공원 사업이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속으로 들어가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단지 내 어린이집 앞에 방치된 작은 놀이터를 한평공원으로 재조성할 수 있겠는가라는 장문의 편지를 도시연대에 보낸 신내10단지 복지관은 복지관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주민들과 함께 단지를 꾸리고 싶어했으며 한평공원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주민과 소통했다. 한평공원 사업을 후원하고 있는 신한은행 직원들도 가세했다. 도시연대 자원봉사자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리고 주민들도 움직였다. 한평공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던 모든 이들은 예산부족문제를 서울시립대학교 축제 때 바자회를 통해서 해결해냈다. 남대문시장 상인들도 허를 내두를 정도의 탁월한 '호객행위'는 '우리 동네에서도 한번 해보자'라는 자신감으로 전환되어 '우리동네 바자회'까지 거침없이 해 냈다. 어린이집 아이들은 화재를 만들었고 장애청소년은 생과일주스를 만들었다. 주민들은 부침개와 떡볶이를, 신한은행 직원과 도시

2)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등장하는 인물

연대 자원봉사자들은 기증받은 옷들을 판매했다. 한평공원에 대한 기대는 세대와 장애와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경계를 모두 허물어냈다. 그 여세를 몰아 2008년에도 음주와 싸움으로 일그러진 작은 공간을 누구나 자유롭게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2차 한평공원으로 조성했다.

2009년, 복지관 2층의 방치된 베란다의 원예치료실 조성은 지역내 주민간의 교류와 소통, 새로운 문화공간과 치료공간이라는 가치를 생성해냈다. 12평의 작은 공간에 원예치료와 미술치료, 모래를 활용한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차단벽을 활용한 벤치와 파고라 설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때로는 분리해서, 때로는 연계해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유연한 활용을 통해 작은 공간이지만 큰 공간보다 훨씬 더 유용함을 알려준 것이다. 채소심기와 천연비누만들기를 통한 환경교육, 원예치료 수업과 연계된 개장식은 새로운 시작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제 신내10단지 복지관은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를 시도하고 있다. 주민들도 동네에서 벌어지는 변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번째 한평공원을 조성할 당시 주민설명회에는 너무나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을 정도였다.

4. 방화6단지 옥상녹화 - 숲속의 도서관

강서구 방화6단지 복지관은 2005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동네에 대한 인식과 욕구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쥐·바퀴벌레 문제, 아파트 계단 청소문제, 통장의 리더쉽문제, 관리사무소의 미온적 일처리, 놀이터 안전문제, 이웃간 갈등 등 아주 구체적인 지역사회현안이 파악되었다. 특히 6단지 주민의 40%인 취약계층 여성세대주의 문화결핍, 여가부족, 취업문제, 양육문제 등은 심각한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주민들은 스스로가 아닌 제3자가 해결해주길 바라는 입장이었다. 즉 주체적인 주인의식속에서 단지내 생활문제를 해결해나가기 보다는 관리소나 복지관 등 제3의 기관이 주도성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08년부터 「꿈·희망·미래재단」이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되면서 방화6단지 복지관은 주민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연대에 한평공원사업을 요청하게 된다. 주인 없이 방치된 외부공간을 소모임과 함께 변화시킬 수 있다면 변화된 공간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외부공간 조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만으로는 '마을만들기 주체'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는 다양한 네트워크 및 마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 주민간의 소소한 일상적 관계 등이 함께 어우러질 때만이 가능하다. 특히 주민간의 다양한 관계를 이어주고 이를 지원해 줄 구심점이 존재해야만 한다.

도시연대는 방화6단지 복지관과 두달간 '시혜적 복지에서 지역복지로의 전환', '5단지과 6단지 주민간의 일상적 연계의 필요성', '저소득 지역에서의 마을만들기 운동의 필요성' 등에 대한 학습과정을 가짐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서의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주민워크숍, 관계자 간담회, 우리마을 읽어보기, 디자인 장터, 어린이 환경교육 등 주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해서 독서와 휴식, 일상적 교류, 다양한 옥외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방향을 정하고 이름을 '숲속도서관'으로 결정했다. 옥상녹화사업과 맞물려 복지관은 후원자를 통해 옥상계단과 연결된 2층 복도에 작은 도서관을 개장하게 된다.

복도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은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평소 책에는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읽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은 프로그램으로서의 독서모임이 아니라 일상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부공간의 녹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녹화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푸르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환경교육의 장이나 닫힌 벽을 무너뜨리는 공동의 학습이나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공간 등 도시에서 옥상녹화의 의미는 조경적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 의미로 확대된다. 주민들에게도 옥상녹화

사업은 다르게 다가왔다. 오래된 단지이기에 녹지가 잘 가꿔져 있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그래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녹지공간을 자신의 생활과 연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방화6단지는 '숲속도서관'이라는 주제가 녹화된 옥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줬다. 옥상과 연결된 계단과 2층 복도에 대한 환경정비 및 작은 도서관을 설치함으로써 하나의 공간은 그 자체로서 완결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연계공간을 통해 그 의미가 확산되고 새롭게 재규정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 것이다.

5. 방화6단지 상가 리모델링을 통한 커뮤니티장소만들기

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미분양 점포가 증가하는 현상은 전국적이다. 현대화된 시설의 대형마트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입지하기 시작하면서 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빠른 속도로 쇠락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미분양점포가 속출하기 시작했으며 방화6단지 상가 역시 급속하게 쇠락하고 있다.

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된 주거단지이기에 개별 가구의 평형은 8-10평 내외로 가구 구성원들의 개별 활동을 담아내기에는 불가능하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학습이나 취미, 문화, 공동작업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단지 내 미분양 점포를 주민들의 공공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은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2009년, SH공사의 후원으로 진행된 상가 빈점포 커뮤니티 장소만들기는 3년간 무상임대 사용에 대한 합의를 한 후 2층 빈점포를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의 소모임장소와 문화강습소로 사용하고 있다.

6. 방화6단지 - 문화와 당당하게 만나기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 다수는 문화활동 경험에 대한 부재로 자녀들까지 문화와 단절되고 있으며 경제적 이유로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은 혼자 놀거나 집에서 방치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또한 문화는 비용을 지불하고 관람하는 것이기에 '여유있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인식속에서 '문화'에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시연대는 복지관과 함께 숲속도서관 및 리모델링 상가 점포의 활용방안으로써 '문화적 가치를 담아내는 공간'을 모색하고 있다. 첫번째는 숲속도서관에서의 정기 영화상영이다. 2009년 숲속도서관 개장 이후 한차례 진행한 영화상영은 엄청난 호응을 몰고 왔고 올해부터 가족과 함께 하는 정기적 영화상영을 기획하고 있다. 또 하나는 '하모니카 오케스트라단' 구성이다. 정서적 빈곤과 소외감을 악기를 통해 서서히 치유해나가는 과정을 가짐과 동시에 합동 공연을 통해 '스스로 참여하고, 가꾸고, 발휘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전 과정으로서의 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2010년 5월 창단하여 현재 7명의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7번의 정기공연 (숲속도서관에서의 공연3회, 외부공연 4회) 확정으로 올 한해 스케줄은 빡빡하다. 다들 외부공연이 가능할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지만 단지 내에서 하모니카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나도 무대에 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이 아이들이 갖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면서도 내심 2년뒤에는 하모니카 연주자인 전재덕씨와의 합동공연에 대한 혼자만의 꿈도 꾸고 있다.

7. 삼산주공단지 barrier free 마을만들기 - 어린이집 앞 금연구역 조성

현재 경사로 설치와 턱없애기에 집중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barrier free 환경조성사업은 오직 휠체어만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barrier free는 시설물중심의 정비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장벽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물리적 환경개선과 사회환경개선이 통합되는 것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

환경조성을 추구해야 한다.

도시연대는 방화11단지과 함께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의 과정으로서 barrier free마을만들기를 시작했다. 1차 조사결과 청소년들의 일탈을 부추키는 단지 내 음침한 공간, 음주와 도박으로 일그러진 상가 앞, 외부사람과 접촉하고 싶어하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을 고려하지 않는 휴식공간, 생활축과 분리된 녹지공간, 고위험비행청소년에 대한 방지, 홀로사는 중년 남성의 배회 등 많은 장애들이 단지 내 생활공간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삼산주공단지에서의 첫 출발은 1차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단지 내 아이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목마른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복지관 앞 마당은 어린이집 창문과 연결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흡연으로 인해 환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금연구역지정은 금연이라는 건강의 문제보다 일탈행위를 일삼던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단지에서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합의를 공간에 투영시키는 출발이었다.

그러나 이 작은 마당을,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이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과연 동의해 줄지, 동의를 하더라도 행위에 대한 자제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다. 복지관과 어린이집의 적극적 동의속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제발 이곳에서 담배피지 말아주세요'라는 홍보물을 일일이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주민들이 주민을 설득하고, 관리사무소와 부평의제21이 함께 지원했던 과정은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게 했다. '그럼 어디서 담배를 피우란 말이냐'는 항의는 '여기서만이라도 피지 말라. 아이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또 다른 주민들의 설득으로 해결되었다. 물론 찻집한 얼굴이었지만. 금연표지판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도 하고 '금연스티커'를 붙인 떡도 나눠드렸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들은 합의된 약속을 지키고 있다. 물론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직 의문이기는 하지만.

8. 영구임대아파트에서의 마을만들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라는 특성속에서 사회적 소외와 편견, 고립감속에 있던 주민들에게 주인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노력들은 다양하다. 방치되었던 외부공간의 리모델링이나 교육, 문화프로그램, 상담, 치료 등 물리적 환경개선과 사회적 관계개선을 위한 지원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들이 커뮤니티 활성화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대안을 모색해나가는 참여과정을 가져야만 한다.

주민들은 스스로의 참여과정을 통해 관계에 대해 재인식한다. 외면하였던 외부공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이웃에 대해서도 찬찬히 바라보게 된다. 스스로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는다. 즉 참여과정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변화에 대한 의견개진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하게 중첩된 관계들을 자신과 연계시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속에서 주민들은 이웃과 삶터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들의 관심이야말로 커뮤니티의 핵심이다.

9.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주민들 대다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으로 일반 주거단지와 성격을 달리하는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물리적 공간에 대한 차별은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간의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임대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 역시 주인의식의 부재로 음주와 폭력, 도박(도박으로 인한 살인), 기물파손, 방뇨, 쓰레기 투기 등 크고 작은 일탈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단지 내 추락자살사고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 5년간 도시연대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마을만들기 운동을 진행하면서 시혜적 복지가 아닌 지역복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만 항상 부딪히는 문제는 '위하여'와 '함께'의 간극이다.

- 일부 주민들은 단지안에서 또 다른 문제행위자이며 심각한 가해자이기도 하다.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동일한 상황이 단지 내에서 몇 년동안 벌어지고 있지만 대응하려는 주민들이 없다. NGO와 '엄석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주민들이 '엄석대'를 제어해야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눈치보고 놀려 있다. 왜곡된 권력에 무심하다.

- '영구'라는 딱지가 불편하지만 주민들은 이곳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 이곳을 떠나면 주민들을 기다리는 것은 음침한 반지하셋방 밖에는 없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이곳을 떠나지 않기 위해 편법을 쓰기도 한다. 체념이다.

- 마을만들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함께 서로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위해서'의 의미가 공허해지는 듯해서 답답하기도 하다.

제 4 부 : 도시와 주거에 대한 권리

- 서중균 (한국도시연구소) 주거권 운동의 역사와 과제
- 김용창 (서울대 교수) 주택의 미래와 주거권, 그리고 주거복지정책 방향
- 변창흠 (세종대 교수) 도시권을 기준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의
구조 분석 및 성과 평가
- 조성찬 (토지+자유 연구소) 거품 의존형 오너십 소사이어티 전략과
전세대론의 인과관계
- 남영호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사회주의 도시의 (재)구성과 주거권

주거권 운동의 역사와 과제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주택의 미래와 주거권, 그리고 주거복지정책 방향

김용창 (서울대 교수)